Ⅰ. 퇴직연금회계 이해의 기초

1. 퇴직연금제(Retirement Pension Plan)의 의의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퇴직후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기업[1]이 주체가 되어 설립, 운영하는 사적 연금제도로서 기업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자가 고용기간동안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퇴직 후에 급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계약(arrangement)을 의미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기존의 근로보상 및 임금후불 성격의 정년 퇴직일시금 등은 경영주와의 분리계정·사외적립과 사전적립의 미흡으로 말미암아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퇴직일시금제도의 불완전한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분리계정, 사외적립 및 사전적립을 정착시키고, 세제우대조치로 기업의 연금기금(pension fund) 설립 활성화와 근로자의 참여 확대를 기하여 공적 연금을 보완하려는 프로그램(quasi-social security program)으로서 출현한 것이다[2].

우리나라에서도 퇴직일시금제도가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퇴직후 노후보장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좌우되는 불안정성이 지속되어 온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3]. 최근의 경기불황은 그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켜 왔으며,

---

1) "기금갹출자(sponsor) 또는 고용주(employer)"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이나 여기서는 "기업"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부록Ⅴ] "연금참여자", "기금갹출자" 참조.

2) 성주호·김진억(1998), pp.4-10.

3) 1994 1996의 3년간 상장기업(996개사)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장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부외부채인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부족분은 평균 5억6천만원, 최대 253억5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퇴직금과 관련한 기업회계기준에서의 고려는 1990년 퇴직급여충당금조항이 신설되면서 적립부족분을 10년이내 기간에 주석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둔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성빈(1998).

‘97년 8월 퇴직금 변제가 담보채무 변제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퇴직일시금제의 수급권 불안정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헌재의 판결은 법리상으로는 옳을지 모르지만,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판결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4].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노동을 빌려주고 임금을 후불로 받기로 한 근로자간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의 재무상태와는 상관없는 퇴직급부 수급권의 보장, 기업에 대한 퇴직금 연계대출의 금지, 대출금 상계처리 금지 등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기존의 퇴직일시금제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그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연금제의 설립과 운영은 관련법령과 법인세, 소득세 및 상속세 등 관련세제 등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기본 정보는 기업과 연금기금의 재무제표를 통하여 파악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금제도의 도입은 관련법령 및 세제와 회계제도를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기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회계(이하 연금회계)에 초점을 맞춰 우리나라보다 먼저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해 온 美國에서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들이 어떤 연금회계기준의 준수를 요구받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지, 그

4) 담보채권에 지불되는 이자에는 채무자의 신용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게 매겨진다. 지급불능위험을 반영한 까닭이다. 한편 퇴직금은 후불임금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가 퇴직금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자에 지급불능위험을 반영한 채권자의 담보채권에 대하여 지급불능위험이 반영되지 않은 퇴직금이 우선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결은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흠결이 있다. 김학은(1998). 퇴직금이 후불임금이라는 점은 퇴직연금회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가정의 하나이다. 제Ⅱ장의 “회계기준의 기본가정”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퇴직금제의 제도적 변천에 대한 요약자료는 제일화재의 기업연금사이트(http://www.hitel.net/~wien524) 참조.

리고 연금기금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연금기금이 어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이 장에서는 연금제의 발전과정과 이에 수반한 제도의 정비, 퇴직연금의 특성 등 연금회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들을 살펴 볼 것이다. 제Ⅱ장에서는 연금회계기준의 변천과 연금형태별 회계처리를 간략하게 본 다음, 제Ⅲ장과 제Ⅳ장에서 기업과 연금기금에 적용되는 연금회계기준의 설정배경, 미국의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차이점 분석 등 핵심내용들을 다룰 것이다. 또한 제Ⅰ장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연금회계와 관련된 제도 및 관련기관들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다룸으로써 연금회계 전반에 대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논의를 매듭짓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이번 연구에 있어서 다루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

2. 퇴직연금의 성장과 관련제도의 정비

가. 연금기금의 성장

미국의 근로자급부연구소(Employment Benefit Research Institute)의 자료에 의하면[5], 미국에서 최초로 나타난 연금기금은 사망한 목사들의 유족들을 대상으로 1759년에 출현한 것이었지만, 공식적인 기업연금이 탄생한 것은 이 보다 한 세기가 지난 1875년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Company)'의 연금제였다. 이후 20세기에 들어와 주로 은행, 철도, 공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약 400개의 연금제가 설립되었다. 194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성장을 거쳐 1992년 사적 연금제는

5) http://www.ebri.org/fundamentals/chpt04.htm.

708,000개에 달하였고, 가입자는 4,500만명이 넘는다. 기업연금을 포함한 미국의 사적 연금기금의 자산도 1980년 6,713억달러에서 1994년에는 3조 2,300억달러로 증가하였으며, 미국인들의 개인금융자산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6년 기준으로 33.1%에 달하고 있다[6].

나. 세제의 정비: 세제적격 연금기금(qualified pension plans)

한편, 연금기금의 성장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세제부문에서도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 왔다. 1921년 세수입법(Revenue Act of 1921)에서 공식적으로 연금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주식보너스제(stock bonus)와 이윤분배제도(profit-sharing plans)의 이자소득을 현행 과세에서 면제해주고,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은 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연시켜 준 것이다. 이후 1928년에 연금의 당기 필요 적립액을 초과하는 기업의 적립부분에 대한 공제가 허용되었고, 1938년에는 기업이 신탁한 기금을 임의로 환수할 수 없도록 하는(irrevocable) 조치를 취하였다. 1942년에는 연금기금의 갹출금과 급부액 및 보장에 있어서 고임금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금운영을 금지하는 무차별 규정(nondiscriminatory rules)을 두었다. 1954년에 들어와 이들 조항들이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으로 통합되었고, 1986년 세제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 의하여 수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연금기금의 세제적격요건(tax qualified requirements)을 제어하는 기본적인 법령을 형성하게 되었다[7].

세제적격에 해당하는 연금기금에 가입한 기업은 기금에 납입하는 갹출금을 세금계산시 공제받게 되고, 근로자들은 향후 연금을 지급받을 때에야 과세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 사이의 갹출금의 투자로 인

6) Kieso & Weygandt(1998), p1092., Josei Ito(1998), p305. EBRI의 미국의 연금관련 통계는 제IV장의 [부록IV-4] 참조.
7) http://www.ebri.org/fundamentals/chpt04.htm.

한 소득에는 면세혜택을 준다. 현재 이러한 세제우대는 1974년에 제정된 근로자퇴직급부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이하 ERISA)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연금기금에 가입한 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IRC와 ERISA에 근거하여 재무부(국세청)와 노동부가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 물론 세제적격으로 인정받지 못한 연금기금들도 퇴직급부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적격 연금기금들에 대한 규제는 세법이 아니라 신탁법(trust law)에 의하여 아루어지고 있다[8].

다. 연금기금과 감독

연금기금의 수와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금기금의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에 대하여도 주목하게 되었다. 연금기금이 퇴직급부의 축적과 그에 따른 위험을 효율적으로 안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한 환경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OECD 국가들의 기관투자가들에 대한 분석자료에 의하면,[9] 1995년 기관투자가들의 투자 중 45%가 보험사와 연금기금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금기금의 투자활동을 위한 정부의 유연한 투자환경 기반조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연금기금에 대한 감독 초점이 수량중심의 감독(quantitative restrictions)보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투자원칙(prudent man investment rule)[10]을 중시하는 감독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1]은 감독

---

8) http://www.ebri.org/fundamentals/chpt04.htm.

9) OECD(1998), pp.53-66 참조.

10) 선관주의(prudent-man rule)란 타인의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이 져야할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탁인(fiduciary)은 신중한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재량권을 가지고 수탁받은 자본으로 적절한 소득을 창출, 유지하고, 투기적인 투자를 피해야 하는 것이다. J. P. Friedman(1994).

방식에 따른 기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이며, 보다 장기간에 걸친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제IV장 4절 참조).

[표1] 연금기금에 대한 감독방식과 기금운용 수익률

감독방식	국가	1984-1993 수익률	1984-1996 수익률
수량규제	벨기에	8.8%	9.0%
	덴마크	6.3%	6.0%
	독 일	7.2%	-
	일 본	6.5%	8.0%
	스페인	7.7%	-
	스웨덴	8.1%	-
	스위스	4.4%	4.0%
선관주의	아일랜드	10.3%	11.0%
	영 국	10.2%	10.0%
	미 국	9.7%	9.0%
수량규제		6.9%	5.2%
선관주의		9.5%	9.5%

자료: OECD(1998), p.60.

라. 퇴직연금의 회계·감사기준

연금기금의 효과적인 위험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연금회계 및 감사 기준이다. 제공되는 재무정보가 건전한 회계기준과 관행에 근거하고 있을 때만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기업회계기준(U.S. GAAP)은 확정급부형 연금기금에 가입한 기업에게 재무회계기준서 제87호, 제88호(State

-ments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87, No.88; 이하 SFAS 87, SFAS 88)에 따라 퇴직연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해당 연금기금에게는 SFAS 35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ERISA와 IRC에서는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기금은 그 규모에 따라 매년, 혹은 3년에 2회는 국세청(IRS)과 노동부(DOL), 연방급부보장공사(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이하 PBGC)에 독립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연차보고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퇴직연금제의 형태와 기금의 분리운영

가. 연금자산의 분리

퇴직기금의 사전적립, 경영주와의 분리 필요성에서 나타난 연금제에서 자산의 분리(segregation of assets from employer's accounts)는 연금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즉, 기금(연금자산)은 기업과 명백하게 분리되어야 하고, 만일 분리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별한 보장(specific guarantees)[11]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된 자산에 대한 근로자들의 권리를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irrevocable pension trust). 이는 기업이 임의로 기금을 환수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연금기금의 독립성이 퇴직연금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

11) 장부상 연금계정의 설정(book reserve)을 통해 기업연금제의 시행을 허용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이런 유형의 연금제가 전체연금제의 60%를 차지한다. 따라서 독일은 기업의 파산 등에 따른 연금기금의 안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미국의 PBGC와 유사한 정부기관인 PSVaG에서 지급불능위험보험(insolvency insurance)을 강제하고 있다. OECD (1998), pp.103-108, 성주호·김진억(1998), pp.23-24, 성주호(1998), p.15.

[그림1]은 연금참가자인 기업과 근로자 및 연금기금 또는 그 기금의 수탁자인 보험회사·신탁회사간의 자금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연금기금은 적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지만, 많은 경우 기금의 운용을 보험회사 등에 위탁하거나,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상품 등을 구입하여 기금적립을 대체하기도 한다[12].

[그림1] 연금참가자들간의 자금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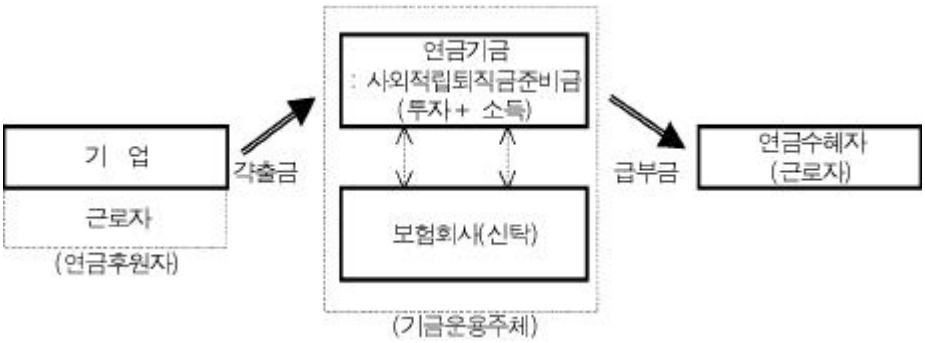

따라서 기금의 운용측면 등에서 [그림1]의 연금기금과 보험회사를 점선 안의 하나의 주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RISA에 의하면, 기업의 퇴직연금제 운용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를 운용하려면 ERISA에서 정하는 일정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3].

---

12) 후자의 경우처럼 기업의 연금제가 보험회사 단체보험계약의 일부라는 것은 기업이 모든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하였음을 의미하며, 보험감독규정에 따른 보장(guarantees)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연금제는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의 일부로서 그 지급을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므로, PBGC 등의 연금급부보장 대상이 아니며, 기업의 파산시에 다른 채권에 우선하지도 않는다. 반면에 기금수탁자로서 연금기금을 관리하는 보험회사는 기금을 보험회사 자체 계정(책임준비금)내에서 운영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분리자산(분리계정)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역할은 그 기금의 행정, 계리 및 재무관리에 국한된다. OECD(1998), p.74. 위의 내용은 다음에 논의 될 연금기금과 기금수탁기관인 보험사의 차이, 급부할당 기금적립, 연금보험상품의 연금기금의 자산·부채에서의 제외 등 여러 개념들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나. 퇴직연금의 형태: 급부수준의 사전확정 여부[14)]

퇴직연금의 급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에 의하면, 확정갹출형 연금제(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 이하 DC)와 확정급부형 연금제(Defined Benefit Pension Plan: 이하 DB)가 있다. 이러한 분류는 연금참여자에 대한 급부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급부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확정갹출형 연금제는 사전에 급부액을 정하지 않는 반면, 확정급부형 연금제(DB)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퇴직후 받을 급부액을 미리 정하고, 해당 기업이 납입하여야 할 갹출액은 급부재원의 축적 정도에 따라 변동된다.

따라서 확정갹출형(DC) 연금제에 가입한 기업이 연금기금에 내는 갹출액의 규모는 근로자의 연령, 근무년수, 급여수준 및 기업의 이익 등을 고려한 산출공식에 의하여 일정하게 정해진다. 확정갹출형 연금제도의 특징은 기업이 납입하는 갹출액만이 확정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퇴직후 받을 급부는 유동적이다. 반면, 확정급부형 연금제(DB)는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급부를 사전에 확정한 형태로서 근무년수와 급여수준을 감안하여 향후에 받을 일정 급부에 대응되도록 갹출액을 결정하므로 갹출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다.

다. 연금형태에 따른 기업과 연금기금의 관계

확정갹출형 연금제(DC)의 경우 연금기금은 독립적인 제3의 수탁기관으로서 연금가입자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자산을 소유·관리한

---

13) 이 장의 제3절 '[ERISA와 PBGC](#)' 참조.

14) 퇴직연금의 분류에 대하여는 여러 기준이 있으나, 여기서는 연금회계를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연금급부설계에 따른 분류인 확정급부형(DB)과 확정갹출형(DC)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하며, 두 유형 모두 연금기금에 납입하여야 할 갹출액을 전액 기업이 부담하는 비갹출형(noncontributory) 연금제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다. 따라서 그 연금자산은 기업과는 명확히 분리되어 연금기금이 투자와 급부의 지급을 관장한다. 그러나 확정급부형(DB)에서 연금기금의 주된 목적은 기업이 근로자들의 퇴직시 그들에 대한 채무를 충당할 수 있을 충분한 능력이 되도록 연금자산을 관리·투자하는데 있다. 따라서 확정급부형 연금기금은 형식적으로는 기업과 별개의 주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in substance) 연금기금의 자산과 부채가 企業에게 속하는 것이다. 결국 적립하여야 할 연금자산의 부족분에 대한 보전 및 적립기준을 초과한 자산의 초과부분 모두 기업의 몫이 된다.

[표2] 퇴직연금 형태별 勞·使의 연금제 선호도

연금 선호도 항목	기업	근로자
1. 갹출금의 안정성(stability)	DC	DC
2. 기금의 지급능력 보장성	DC	DC
3. 노·사간 제도에 대한 이해도	DC	DC
4. 운영상 간편성(simplicity)	DC	DC
5. 급부수준의 변동성 및 이관성 (portability)	DC	DC
6. 갹출금수준의 신축성	DB	DB
7. 노후소득보장의 적합성	DB	DB
8. 기금투자의 적합성	DB	DC
9. 공적연금과의 연계성	DB	DB
10. 재정방식의 필요성	DB	DB
11. 경기의 장기적 호황(불황)예상	DB(DC)	DC(DB)

자료: 성주호·김진억(1998), p45.

그러므로 확정갹출형 연금기금의 수혜자가 근로자라면, 확정급부형 연금기금의 수혜자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연금형태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들의 반응이 상반되게 나타나기도 한다. 확정갹출형 연금의 경우에는 기금변동 위험을 떠안게 되는 勤勞者들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기금변동에 상관없이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급부를 지급하는 확정급부형 연금에서는 기금의 변동에 대해 企業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기업은 경기불황기일수록 연금기금의 변동위험을 기업이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확정갹출형 연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15].

[표2]는 기업과 근로자간의 확정급부형 연금과 확정갹출형 연금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확정급부형(DB)은 지급할 급부액을 사전에 정해 놓는 특성에서 연유하는 불확실한 미래변수들로 인하여 그 계리적 산정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확정갹출형(DC)보다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띄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등의 선호도 항목 1 5에 대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 보다 간편한 확정갹출형(DC)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노·사간 공동갹출 (contributory)형태 등을 포함한 연금제에 대해서는 갹출금 수준의 신축성, 노후소득보장의 적합성 등의 항목에서는 확정급부형(DB)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선호도 항목 8과 11에 따른 근로자와 기업의 반응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15) 미국 연금기금의 형태별(DB, DC) 선호도 변화에 따른 기금의 수 및 기금가입자 수의 변화에 대한 통계는 본문의 [부록Ⅳ] 참조.

Ⅱ. 연금회계기준의 변천과 ERISA

1. 연금회계의 초점과 회계처리 개요

가. 연금원가(비용)와 연금채무

역사적으로 연금회계는 연금제도(pension plan)가 연금후원자(sponsor)인 기업의 수익과 재정상태에 주는 영향을 측정하는데 관심을 두어 왔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연금급부의 원가를 측정, 기록하고 연금제에서 미적립된 연금채무(actuarial liability)[16]와 당기의 연금비용을 인식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왔었다[17]. 따라서 기업이 연금기금에 지급하는 갹출액, 즉 연금의 순기간원가(net periodic pension cost) 또는 연금비용[18]을 어떻게 얼마나 인식할 것이며, 연

16) 계리적 연금채무(actuarial liability)란 계리인이 적립된 연금자산에 대응하여 해당 연금기금의 계산기초와 기금적립방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바람직한 수준의 부채를 말한다. 이렇게 산정된 부채를 연금수리에서는 "표준부채"라고도 한다. 생명보험의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과 유사한 개념이다. 연금채무에서 "계리적 또는 보험수리적(acturial)"이란 의미는 위험요소를 반영한다는 의미이며, "현재가치(present value)"란 이자율로 할인된 가액(dicounted value)으로서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를 반영하였다는 의미이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모든 "연금채무"는 "계리적 연금채무"를, "연금채무의 현재가치"는 "연금채무의 계리적 현재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성주호·김진억(1998), p.92., OECD (1998), p.80.

17) Don McGill et al.(1996), p621. 다르게 표현하면, 연금자산(기금)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financing) 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당기의 연금비용과 연금채무를 얼마나 재무제표에 표시하느냐가 기업의 주 관심사이다.

18) Hongren은 원가를 "Cost is the monetary value of resources sacrificed or foregone to achieve a specific object"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원가는 다시 수익창출력 유무에 따라 잠재적 수익창출력을 지닌 자산(asset)과 일정기간의 수익창출과정에서 소모되어 더 이상 수익창출력이 없는(또는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않은) 비용(expense, 또는 손실(loss))으로 나뉜다. 이 개념에 따르면, "연금비용"과 "연금원가"는

금채무를 얼마나 어떻게 인식[19]할 것인가가 연금회계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있다.

나. 확정갹출형(DC) 연금회계

확정갹출형 연금제(DC)에서 근로자는 연금기금의 자산운용의 이득 뿐만 아니라 손실의 위험도 감수하는 반면, 기업은 갹출금 산출공식에 근거하여 매년 일정 갹출액을 납입하기만 하면 된다. 기금투자위험에 의한 투자손실을 기업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확정갹출형 연금의 회계처리는 매우 간단하다.

확정갹출형 연금제는 특정 회계기간동안에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 기간동안 기업이 얼마의 갹출액을 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공식이 있거나, 기업에게 완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재량이 부여된 경우에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갹출액을 지급했거나 최소한 확정되어 있다. 기업이 해당 기간에 비용화할 부담액은 그 기간동안 연금기금에 납입한 실제 금액이다. 따라서 필요한 갹출액 중에서 기간말까지 지급이 안된 부분은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미지급금(account payable)이라는 부채로, 필요액 이상이 갹출된 경우에는 자산으로 기록된다.

기업은 급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으므로 기업의 대차대조표에는 미지급금 이외의 연금채무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만, 연금비용 외에 연금가입대상 근로

차이가 있다. 본문에서는 되도록 "연금원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Hongren(1994), J. G. Siegel(1995), [부록Ⅴ]의 "순기간원가(net periodic pension cost): 연금비용" 참조.

19) 회계에서 인식(recognition)이란 회계주체(기업)가 어떤 사항을 계정에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는 공식적인 과정으로서 이에는 글과 수치로 표현되는 것이 포함되며, 자산과 부채에 있어서는 그 취득·발생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인식되었던 것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 취득·발생 이후의 변동을 기록하는 것이다. Kieso & Weygandt(1998), p970.

자군, 갹출액 결정근거, 기간별 비교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들의 특성 및 효과 등을 포함한 연금제도의 개요 등은 통상적으로 재무제표에 공시되어야 한다[20].

다. 확정급부형(DB) 연금회계

확정갹출형과는 대조적으로 확정급부형(DB) 연금회계는 매우 복잡하다. 기업은 연금제가 지속되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확정급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확정급부형 연금에서는 급부금이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퇴직시기의 급여수준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퇴직급부금 지급에 대응하여 지금 얼마의 갹출액을 걷을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갹출액 산정에는 여러 방식이 사용될 수 있으나, 어떤 산정방식을 사용하든 퇴직시에 지급할 확정급부금에 대하여 충분한 자금을 비축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매 기간별로 인식되는 연금비용은 기업이 실제로 납입한 현금갹출액과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21]. 채무에 있어서도 그 측정과 인식이 장래의 불확실한 변수들과 관련되어 있어 논란이 많은 부분 중의 하나이다.

2. 연금회계기준의 변천[22]

가. ARB 기준들과 APB 기준의 제정

---

20) SFAS 87, pars.63-66.

21) 이는 연금회계가 과거의 현금주의(cash basis)에서 벗어나 발생주의(accrual basis)원칙을 채택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현금주의란 현금입금시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지출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 방식이다. 따라서 현금주의는 경영진이 현금지출과 수입을 조절함에 따라 동일한 회계상의 사건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단점이 있다. 본문의 다음 절 '연금회계기준의 변천' 참조.

22) SFAS 87의 부록C(Appendix C: pars.262-263)와 Don McGill, et al.(1996), pp.626-630. 참조.

현행 회계기준들이 공표되기 이전의 연금에 관한 최초의 권위있는 회계기준은 1948년에 공표된 회계연구공보(Accounting Research Bulletin: ARB) 제36호, "연금제도: 과거근무에 근거한 연금원가"와 이를 그대로 반영한 1953년의 ARB 제43호, "ARB 개정"의 제13장이 있었고, 연금회계전반을 다룬 최초의 문건은 1956년에 공표된 ARB 제47호, "연금원가회계(Accounting for Pension Cost)"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서 연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회계처리의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회계기준위원회(APB)는 언스트 힉스(E. L. Hicks)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견서8호(APB Opinion No.8: 이하 APB 8), "연금원가에 대한 회계"를 공표함으로써 SFAS 87/88이 나오기 전까지 20년간 연금회계의 공식지침이 되어 왔다.

APB 8이 공표되기 전의 연금회계의 일반적인 관행은 특정회계기간의 갹출액을 그 기간의 연금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었다. 이는 현금주의(cash basis) 회계형태로서 연금기금으로의 갹출액이 회계적인 고려보다는 현금가용성, 기업의 당기손익 등 연금과는 관련없는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세무적인 판단에 좌우됨으로써 비용산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회계기간별 갹출액을 조정함으로써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연금비용의 조작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있는 기업들간에도 계산기초, 계리적 원가산정방식, 또는 기금적립정책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연금비용이 나타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연금기금에 납입하는 갹출액을 줄이거나 누락하기만 해도 해당 년도의 당기손익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

수 년동안 많은 기업들, 그 중에는 유명한 기업들까지도 연금급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또는 2년 동안 재무제표에 한 푼의 연금비용도 계상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리한 현금흐름 즉, 세제상의 혜택을 얻을 목적으로 비례적이지 못한 거액의

갹출금을 특정년도에 집중시킴으로써 실제 잉여금을 과소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재무제표에 근거한 분석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것이었다.

나. APB 기준

APB 8은 연금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기업이 재량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원가는 기금적립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인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기본적인 회계방법에 대한 요소들을 설정하고, 연금원가결정에 필요한 계리적 원가산정방법들을 열거함은 물론 계리상 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정하고, 원가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근로자들의 자격기준을 정하였다. 또한 연금제도의 중요한 사항들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시사항에는 연금제의 주요 특징, 적립기준, 연금원가의 연간 비용계상액 및 그 결정근거, 그리고 연금제의 수정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되고 있다.

원가의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APB 8[23]에서는 연금원가가 합리적인 계산기초에 근거하여 계산되도록 하고, 계리적 원가산정방식이 합리적이라면 특별히 그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다. 다만, 후일시금방식(terminal funding)[24]과 비적립방식(pay-as-you-go: unfunded pen-

23) APB 위원들간에 급부의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심하였다. 따라서 의견차를 좁히려는 의도에서 발생원가의 최소와 최대범위를 정하여 기존의 자의적인 원가산출관행을 줄이고자 했다. Don McGill, et al.(1996), p.626.

24) APB 8이전에 인정되었던 기금적립방식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기업은 근로자에게 퇴직이후에 매월 지급할 급부를 일시금(lump sum)으로 따로 준비해 놓는 방식이다. 생존여명, 매월 약속된 급부, 준비금에 붙는 예상(이자)소득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하며, 이 일시금은 신탁기금에 맡기거나 연금채를 구매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 of 1974)에서는 더 이상 비적립방식(pay-as-you-go, or current disbursement)과 후일시금방식(terminal funding)을 적격연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Harvey W. Rubin(1995).

sion plan)[25]은 금지하였다. 이는 APB 8이 산정방식의 신축성을 원하는 계리인 및 기업의 바램과 비교가능성을 바라는 회계사의 요구에 대하여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손익(actuarial gains and losses)은 근로자들의 미래근무기간에 걸쳐서 자동적으로 안분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년에서 20년간 상각하거나 미적립 채무에 가감하도록 했다. 그러나 발생한 손익이 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이 없고, 기업의 사업활동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회성인 경우에는 그 전체 손익을 즉시 인식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미적립 채무는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이 연금급부를 제공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고, 발생급부의 가치가 지급액 또는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또한 실제 갹출액이 그 해에 계상할 연금의 순기간원가(연금비용)보다 적다면, 그 차이를 발생연금원가(accrued pension cost)라는 부채계정으로 나타내도록 하고, 비용보다 크다면 그 초과분을 선급연금원가(prepaid pension cost)라는 자산계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두 가지 예외를 두었다.

다. ERISA와 현행 회계기준들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를 비롯한 회계기준 제정기구들은 연금원가와 연금채무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서 계리인들에게 지침이 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들(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

25) 비적립(일종의 세대간 부담이전, pay-as-you-go or current disbursement) 또는 부과방식은 연금제도가 자금조달을 신규로 참가하는 근로자들의 갹출액에 의존하는 방식으로서 이들의 갹출액을 퇴직한 사람들의 급부지급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성장이 둔화되거나 성숙기 또는 쇠퇴기에 들어선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퇴직근로자들에게는 충분한 급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Harvey W. Rubin(1995).

Principles: GAAP)을 개발하고, 현실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1974년 제정된 연금개혁법(ERISA)에서는 연금기금들이 일정한 보고와 공시를 하도록 하였으며, 회계사들에게는 보고서의 재무정보에 대한 적정성 및 정확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26]는 두 가지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는데, 그 하나가 연금기금을 위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개발하는 것이었고[27], 나머지 하나가 연금기금의 가입자인 기업과 비영리법인을 위한 회계원칙을 개발하는 것이었다[28]. 그 결과로 연금기금의 회계기준인 SFAS 35와 기업의 연금회계기준인

---

26) FASB는 미국 (기업)재무회계기준의 제정기관이다. 다양한 분야의 7명의 전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위원의 선임은 FASB를 지원하는 재무회계재단(FAF)에서 행사하고 있다. 대공황을 계기로 1933년 연방증권법, 1934년 연방증권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당시 회계기준의 제정주체인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는 뉴욕증권거래소와의 협력을 위하여 AICPA 산하의 CAP(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 1939-1959)를 통하여 "ARB"(Accounting Research Bulletin)를 공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CAP보다 권한이 강화된 AICPA의 Senior Committee인 APB(Accounting Principles Board, 1953-1973)에서 "Opinions"를 공표하여 오다가, 1973년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AICPA와 별개로 설립되면서 "SFAS"를 현재까지 제정해오고 있다. Kieso(http://www.wiley.com/college/kieso). 본문의 연금회계를 논의하면서 계속 언급될 이들 회계기준들을 ARB, APB (Opinion), SFAS로 약칭하기로 한다. 이들 세 가지 기준들간의 적용우선순위는 동일하다(미국 회계감사기준(GAAS) SAS 69, AU411).

27) 연금기금에 대한 회계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FASB의 두 가지 프로젝트 중 하나의 결과로서 1980년 3월에 SFAS 35, "확정급부형 연금기금의 회계보고기준"이 공표되었고, ERISA에서는 기업 또는 연금관리자에게 일정한 양식의 보고서들을 노동부(DOL), 연금급부보장공사(PBGC), 국세청(IRS)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제Ⅳ장에서 하기로 하고, 본 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연금회계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로 SFAS 35는 그 표제에서 나타나듯이 확정갹출형 연금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8) SFAS 87, para.1.

SFAS 87 과 SFAS 88이 공표되었다.

3. ERISA와 PBGC

가. 1974년의 연금개혁법(ERISA)

미 의회는 근로자 퇴직급부제도의 문제점, 특히 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근로자에 대한 정보와 충분한 안전장치의 결여 등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사적연금에 대한 규제법으로서 1974년 '근로자퇴직급부소득보장법(ERISA)'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29]. ERISA는 최저기금적립요건(minimum funding requirements) 등의 기금적립체계, 수급권 획득기준(vesting requirements)과 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설계 등에 대한 최소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연금과 같이 관련법령 및 세법에 민감한 제도에 대한 ERISA의 영향은 매우 크다. 이 법의 시행으로 기업은 그 이전과 달리 자의적인 기금적립이 불가능해졌으며, 기금이 적절하게 적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부과와 함께 기금적립에 따른 세금공제혜택[30]이 없어지는 등의 불이익 조치가 뒤따른다.

ERISA에서는 기업이 연금기금을 반드시 설립할 것을 요구하

---

29) Steven H. Gills(1998).

30) 연금제에 가입한 기업이 납부하는 갹출액에 대한 세금공제액은 확정급부형(DB)의 경우 계리적으로 산출된 갹출액이나, ERISA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적립요건이 세금공제액으로 적용된다. 한편 확정갹출형(DC)의 경우에는 연금기금에 납입된 갹출액 중 연금참여 근로자들의 당해연도 지급 또는 발생 급여의 15%를 상한으로 하여 공제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한 갹출액은 그 이후 연도들의 세금공제액에 합산되지만(carried forward), 이 경우에도 각 연도의 합산공제액의 상한은 당해연도 급여의 15%까지만이다. P. R. Delaney(1998a).

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연금기금을 설립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근로자가 낸 갹출액에 대한 연금수급권은 일반적으로 즉시 인정하여야 하고,
(2) 기업이 갹출액을 부담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5년의 근무기간을 채우면 수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31]. 또한,
(3)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면 연금기금으로의 가입 지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4) 기금운용의 적정성을 위하여 기금의 투자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5) 기금내 근로자들에게 연차보고서를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32]. 따라서 연금기금은 포괄적인 연금제도의 개요와 연금요약서 및 상세한 연차보고서와 부속명세서들을 공시하여야 하고, ERISA에서 정한 서류들에 대해서는 독립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33].

---

31) 1974년 ERISA에서는 연급수급권에 대하여 (1) 근속기간이 10년이상이면 수급권을 얻는 "Cliff Vesting"(10-year rule), (2) 근로자의 나이와 근속년수를 합하여 45에 달하면 50%의 수급권이 주어지고, 이후 매년 10%가 추가되는 "Rule of 45", (3) 근속년수 5년말에 최소한 25%, 그 다음 5년에는 매년 5%, 그 다음 5년에는 매년 10%씩이 가산되는 "Five to Fifteen Rule"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세제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 따라 1989년 1월 1일부터는 위의 3가지 대신 두 가지 수급권을 제시하고 있다. (1)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5년이상이면 100% 수급권을 인정하는 "full vesting," (2) 근무기간이 3년이 지나면 20%, 그 이후에는 매년 20%씩 인정되어 7년차에 100%인정되는 방식이다. Harvey W. Rubin(1995). 이와 관련된 예시와 미·일 비교자료는 보험개발원(1997), pp.127-130., 류건식·손성동(1998), pp.215-217. 참조.
32) P. R. Delaney(1998b).
33) 100인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한 연금기금에 해당. ERISA 103(a)(3). 본문의 제IV장 참조.

나. PBGC

ERISA의 또 하나의 중요한 조항이 연금급부보장공사(PBGC)에 관한 사항이다. PBGC의 목적은 활동이 중단된 연금기금들(terminated plans)[34]을 관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PBGC는 연금의 미적립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기업의 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기업이 연금제를 중단하는 경우 PBGC의 담보권은 세법상의 담보권에 해당하여 기업에 대한 대부분의 채권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35].

그러나 ERISA에서는 PBGC가 기업의 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한도를 기업 순가치의 30%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ERISA는 PBGC에게 기업의 순가치가 연금급부채무를 충당하기에 충분한가를 늘 감시하도록 하고, 연금채무의 지급불능위험이 매우 큰 경우에는 해당 연금기금에 대한 중단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36]. PBGC의 재원조달은 연금기금이 내는 연금대

---

34) 초기에 ERISA는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multi-employer plans)에서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벌칙을 받지 않고 그 연금채무를 PBGC에게 이전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상당 수 기업이 연금제를 빠져나가 복수기업 연금제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나타나자 의회에서는 1980년에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개정법(Multi-employer Pension Plan Amendment Act of 1980)을 제정하여 ERISA를 수정하였는데, PBGC의 관리대상을 지급불능(insolvent) 연금기금으로 한정하고, 탈퇴기업에게는 해당 연금기금의 확정급부 중 미적립된 부분의 일부를 책임지게 하는 벌칙을 부과하였다. Kieso & Weygandt(1998), p.1123. 복수기업 연금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제Ⅲ장 제5절 참조.

35) 이 경우 PBGC에서 보장하는 연금은 세제적격 확정급부형 연금들(Qualified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만이다. Harvey W. Rubin(1995).

36)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담보권의 설정권한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Pan Am의 경우이다. 팬암은 1991년 파산신청을 냈는데, 이 때 9억달러의 연금채무를 지고 있었고, 막상 연금이 중단되었을 때는 PBGC가 담보권을 설정할 대상 자산의 순가치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Kieso & Weygandt(1998), p1122 1123.

상 근로자 1인당 연간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다[37]. 연금채무의 지급 불능위험과 관련된 연금회계상의 문제는 연금제도의 중단 가능성에 따른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y)를 언제 재무제표에 공시하느냐의 문제이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는 못하다[38].

37)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1인당 보험료가 산정되고, 연금기금의 재정상태에 따라 추가 보험료가 더해진다. 보험개발원(1997), p.123.

38) Kieso & Weygandt(1998), p.1123.

Ⅲ. 기업의 연금회계처리: SFAS 87

1. SFAS 87, "기업 연금회계"의 기본가정[39]

가. 후불임금(deferred compensation)으로서의 연금

제Ⅱ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APB 8은 연금회계기준을 정립했다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양한 원가산정방식과 상각 관행, 연금비용의 인위적인 평준화를 허용하고, 일부 채무를 기업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계산기초의 선택에 있어서 많은 자의성이 개재되어 있다는 문제점들이 관련 전문인들에 의하여 제기되어 왔다. 이에 FASB는 이를 개선하려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 결과로 1985년에 SFAS 87, "기업 연금회계"가 공표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SFAS 87을 제정하면서 설정된 중요한 기본 전제들(underlying propositions)이다. 후불임금, 집단이 아닌 개개인에 대한 채무, 연금기금의 계속성, 기업과 별개 주체로서의 연금기금, 급부의 비례적 획득, 과거근무에 대한 급부의 소급인정이라는 개념들이 SFAS 87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SFAS 87에서는 연금을 후불임금(deferred wages)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는 그가 제공한 근로의 일부를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장래에 일정 급부로 지급하겠다는 기업의 약속과 교환한 것이다. 연금에 참여함으로써 근로자는 암묵적으로(또는 특정 단체교섭 상황에서는 명시적으로) 지금은 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그 대신에 연금제의 조건과 여건에 따라 연금급부를 받는 것에 동의한 것이고, 기업은 연금기금에 납입하는 갹출액과는 별개로 그에 상응하는 채무를 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

39) Don McGill, et al.(1996), pp.630-632.

더욱이 이러한 후불임금의 최종지급액에 대한 기업의 채무는 연금기금이나 근로자집단이 아니라 근로자 개개인(obligation to individuals)에 대하여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서 보면, 연금기금이나 관련 신탁기관은 기업이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를 청산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수단 또는 대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연금기금에게 필요한 갹출액을 납입하는 것으로 그 채무를 벗어난다는 개념을 확정급부형(DB) 연금회계에서는 수용하지 않는다. 또한 연금에 갹출한 금액은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환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연금자산에 대하여 금융위험(a financial stake)을 안고 있다. 자산의 총수익률이 예정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기금에 납입할 갹출액을 줄일 수 있지만, 연금기금의 투자실적이 좋지 않으면 예상보다 많은 갹출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기업은 자산운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원본손실이 있으면 이를 보전하여야 하는 것이다[40].

나. 무한지속성을 지닌 독립 주체로서의 연금기금

SFAS 87의 연금기금에 대한 첫 번째 전제는 기금의 계속성(continuance)이다. 이 가정이 중요한 것은 발생하는 모든 급부가 결국에는 지급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계속성을 전제로 할 때, 기업은 수급권획득 조건이 충족된 기발생 급부, 즉 확정급부(vested benefits)만을 볼 수는 없다. 연금제가 중단되면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급부(nonvested benefits)는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금이 지속된다면 연금수급권 자격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수급

40) 급부수급자격(qualifying for a benefit), 근로자 이직 및 사망과 관련된 우발성(contingencies)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기업의 채무가 연금참여자들, 즉 근로자집단에 대한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면, 위의 두 견해간의 차이는 현실적이라기 보다는 개념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Don McGill, et al.(1996), pp.631.

권을 획득한 근로자의 급부 뿐만 아니라 아직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근로자의 급부도 지급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서의 연금기금의 자율성(autonomy)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연금기금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대차대조표에 연금자산과 연금채무를 계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기업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연금기금의 자산에 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며, 그 자산들은 연금기금이 존속하는 한 자금공급자들이 접근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연금자산은 기업의 급부채무에 대한 상계물로서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FASB는 연금기금의 자산과 채무의 순차이를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 급부의 비례적 획득과 소급급부의 인정

연금참여자인 근로자는 매년 장래 총 급부의 일정비율 만큼씩을 비례적으로 얻게 된다(benefit earned proportionately)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급부발생의 측정과 관련된 것이다. 한 회계기간동안 근로자의 근무가 기업에게 수익을 창출해 준다고 가정하면, 그 기간동안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총 임금(total compensation package) 중 연금원가 부분은 현금급여(cash wages) 및 현재의 복리후생급부(fringe benefits)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영업활동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여러 회계기간마다 총 연금을 획득해가는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근로자들은 그들의 급료 또는 임금을 벌어들이는 것과 동일한 비율로 연금을 얻어가야 한다. 이는 각각의 회계기간에 안분된 추정 연금급부액이 급여의 평준율(level percentage of pay)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계리인들은 평준화된 연간연금원가, 즉 연금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추정 총 연금을 임금의 일정비율로 안분하거나 귀속시키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FASB는 총 연금을 전체 근무기간에 걸쳐서 비율 배분하는(prorate) 것을 택했고, 이렇게 하면 각 근무년도마다 발생하는 급부가 고정된 액수(constant dollar amount)로 산출되게 된다.

또 한 가지 급부에 대한 가정은 연금제 시행 이전의 과거근무(prior service or past service)[41]에 대한 급부의 미래가치(future value)를 인정하는 것이다. 연금제의 개시 또는 수정 이전의 근무에 대한 급부를 인정해주는 것이 근로자들의 이직률 감소, 생산성 향상, 보다 낮은 현금임금, 능력있는 인력의 유인을 가져와 기업에게 향후 경제적인 편익을 가져 온다는 근거에서다[42]. 이는 과거근무급부를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이 아니라 미래 소득(future earnings)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또한 과거근무급부의 미래원가와 상계할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도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과거근무급부로부터의 경제적 편익은 과거근무급부를 인정해 준 이후에 나타날 기업에 대한 근로자들의 노력과 태도로부터 인식된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무형자산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active employees)의 잔여

---

41) 과거근무에 대해서는 SFAS 87에서 연금제 시행·수정 이전의 근무에 대한 급부를 소급해서 인정해 주는 경우의 용어는 "past service"라 하고, 이와 달리 "prior service"는 과거근무를 포함하여 급부채무 측정일 이전의 모든 근무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하지 않고 "과거근무원가"라는 표현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외국 문헌에서도 명확하게 구별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부록 Ⅴ] 참조.

42) 1948년에 공표된 ARB 제36호, "연금제도: 과거근무에 근거한 연금원가(Pension Plan: Accounting for Annuity Cost based on Past Services)"에서 이미 무형자산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왔다. ARB 36, para4, "...위원회는 연금원가의 계산이 과거근무에 근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원가는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의 현재와 미래의 근무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혜택을 받는 현재와 미래기간에 원가를 배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Don McGill, et al.(1996), p.626.

평균근무기간에 걸쳐서 상각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SFAS 87의 근저를 이루는 위 세 가지 범주의 여섯 가지 개념들은 이후의 논의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 가정들이 SFAS 87의 회계기준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 장의 [부록III-1]에 요약해 놓았다.

2. 연금채무와 연금자산의 측정

가. 연금채무의 두 가지 측정방식

연금채무는 크게 두 가지 측정방식으로 나누어 진다. 하나는 발생급부방식(accrued actuarial method)에 의한 발생연금채무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예상표준급부방식, 또는 미래급부방식(projected actuarial method)에 의한 미래연금채무이다. 발생연금채무는 채무측정일 기준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이미 발생한 급부의 현재가치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향후 지급할 연금급부의 현재가치를 합한 것인데, 이들의 현재가치를 산출하는 데에는 현재급여(current salaries as in the current unit credit method)를 반영하거나 미래의 예상최종급여(projected final salaries as in the projected unit credit method)를 반영한다. 반면에 미래연금채무(projected actuarial liability)는 발생연금채무에 더하여 현재 근로자들의 미래 근무분에 대응하여 향후 발생할 연금급부의 현재가치까지도 고려하는 것이다[43]. FASB에서는 발생급부방식에 의한 연금채무의 측정만을 인정하고 있다[44].

---

43) Joo-Ho, Sung(1997).

44) 미국의 연금회계에서는 위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발생급부방식을 채택하고, 근무년수에 대응한 급부획득방식인 급부/ 근무년수 비율(본질적

나.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

발생급부방식에 의한 연금채무는 근로자가 연금수급권을 취득하였는지, 그리고 연금채무 추정에 적용되는 급여수준을 현재급여수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급여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확정급부채무, 누적급부채무,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확정급부채무(vested benefit obligation: 이하 VBO)란 근로자가 향후 추가 근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현재의 급여수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다. 이는 연금급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급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퇴직일시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45]. 누적급부채무(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이하 ABO)[46]란 특정일까지의 근무기간 및 계산기초(actuarial assumptions)[47]와 현재 급여수준(current salary levels)에 근거하여 해

으로 unit credit 또는 projected unit credit과 동일한)방식에 의하여 연금채무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 개정된 국제회계기준에서도 미래급부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개정 IAS 19). 본문에서는 발생급부방식의 연금채무의 하나인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PBO)을 미래급부방식(Projected Actuarial Method)에 의한 미래연금채무와 구분하기 위하여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라고 번역하였다. PBO를 "예측급부채무"라고 번역한 문헌들도 있다.

45)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년수 1년미만인 경우는 퇴직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46) SFAS 제35호에서는 "누적급부의 계리적 현재가치(actuarial present value of accumulated plan benefit)"란 용어로, 제IV장의 연금기금의 회계에서 설명할 양식 5500에서는 "발생급부의 현재가치(present value of accrued benefit)"란 용어로 불리우고 있다.

47) 계산기초란 경제 및 인구통계학적 요소들의 예측치 집합으로서 SFAS 87에서는 최량·최선의 추정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계산기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주호·김진억(1998), p.70-72.

당 기간의 연금비용과 기간말 연금채무를 추정하는 방식(accumulated benefit approach: current unit credit method)에 따라 산정된 연금채무의 현재가치[48]를 말한다. 확정급부채무(VBO)와 비교하여 누적급부채무(ABO)는 연급수급권의 자격 유무를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누적급부채무는 확정급부채무에 연금수급권이 없는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채무부분을 얹어 놓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rojected benefit obligation: 이하 PBO)는 누적급부채무(ABO)와 유사하게 산출되지만, 미래의 예상급여수준(projected salary levels)을 적용하여 해당 기간의 연금비용과 기간말 연금채무를 측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연금채무의 현재가치라는 점에서 누적급부채무(ABO)와 다르다.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는 급여추정치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하게 될 급부액을 추정하고, 그 추정급부 중에서 측정일까지의 근무와 연계되는 급부의 비율을 결정한다. 따라서 급부가 임금에 연동되지 않는(non-pay-related, or flat benefit) 연금제에서는 누적급부와 미래급여반영급부가 동일할 것이다.

FASB는 예상 단위급부획득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 PUCM)[49]을 적용한 연금채무(PBO)를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를 채무측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미래에 받을 급여수준을

48) 연금채무의 현재가치란 현재시점과 미래 지급예상시점간의 화폐의 시간가치와 사망, 장해, 연금탈퇴, 퇴직 등 계산기초에 근거, 지급가능성을 감안하여 계산된 금액을 의미한다. 통상 "연금채무의 계리적 현재가치(actuarial present value)"라고 한다. Kieso & Weygandt(1998), p.1097. 본문의 제Ⅱ장 제1절의 각주16. 참조.

49) SFAS 87에서는 PUCM을 "급부/ 근무년수 비율방식(benefits/ year-of-service approach)"으로 부르고 있다. 이는 근무년수에 비례하여 급부를 얻어가는 방식으로서 미래의 급여상승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 대비되는 단위급부획득방식(unit credit method: UCM)은 현재의 급여수준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UCM은 ABO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그림2] 측정방식별 연금채무의 비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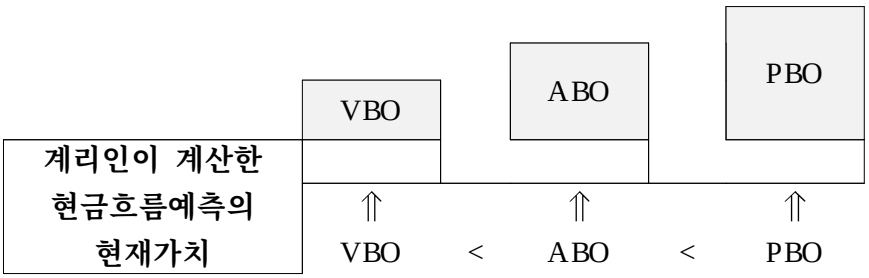

자료: Kieso & Weygandt(1998), p.109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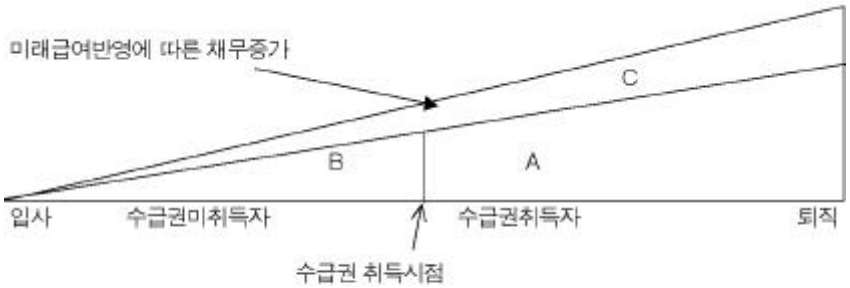

VBO = A
ABO = A + B
PBO = A + B + C

자료: 多賀谷 充(1989), p.20.

사용하는 것은 현존 채무에 미래채무를 추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지지론자들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미래에 받을 급여의 일정 비율에 근거하여 급부를 지급하겠다는 것과 현재 급여의 일정 비율에 근거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며, 그 차이를 연금채무와 연금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50].

50) 미국에서는 연금비용을 미래의 추정급여에 근거하고 있지만, 일본과 독일에서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Kieso & Weygandt(1998), p1097. 그

[그림2]는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연금채무를 나타내고 있는데, (1)은 동일시점에서의 세 가지 연금채무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고, (2)는 근로자 한 사람에 대한 입사후 퇴직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급부증가를 연금수급권 획득시점을 전후로 대비하여 ABO와 VBO와의 차이, 그리고 미래급여를 반영할 때 전체적으로 급부가 상향됨을 보여줌으로써 VBO, ABO, PBO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현재가치로 표현되는 연금채무의 규모는 연금의 장기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그 적용할인율이 조금만 변화하여도 급격하게 변동하게 된다[51]. 따라서 연금회계에서는 매 측정일마다 적정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52].

다. 연금자산의 측정과 연금보험상품(annuity contract)

SFAS 87은 연금자산의 측정에 대하여 두 가지 측정법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가액(fair value)과 시장연동가치(market-related value)이다. 공정가액이란 청산 또는 강제처분이 아닌 판매 및 구매 의도를 가진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현재 자산거래에서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거래금액을 말하며,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공정가액은 시장가치(market value)를 의미한다. 반면 연금자산의 시장연동가치는 공정가액일 수도 있고, 5년 평균 시장가치법(five-year-average-market-value method)과 같이 5년 이내 기간동안의 공정가액의 변화를 인식하는 계산가액일 수도 있다[53].

러나 최근 일본 및 국제회계기준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과의 비교'에서 논하게 될 것이다.

51) 1%의 이자율 변동은 연금채무를 15% 25% 변동시킬 수 있다고 한다. PBGC의 1996년 보고서에서는 기업연금의 기금적립부족의 증가가 주로 1995년의 이자율 변동(1994년의 17.5%에서 1995년 5.3%로 하락)에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Kieso & Weygandt(1998), p1096., OECD(1998), p.87.

52) 다음 절의 연금의 순기간원가 중 '연금채무의 이자비용' 참조.

연금자산에는 급부를 제공하기 위해 연금기금이 구입한 연금보험상품(annuity contract)[54] 또는 연금신탁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포함되지만, 기업의 기타 자산이나 연금기금적립을 위하여 기업내에 적립한 기금이나 준비금이라도 그 사용이 효과적으로 제약되어 있지 않은 자산은 연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55].

연금기금이 보험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연금보험상품은 보험회사가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할 정해진 연금급부의 제공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상품은 회계처리상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연금채무의 측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에 대응하는 연금자산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다만, 배당부상품(participating contract)인 경우에는 배당부상품의 구입가격과 이 상품과 유사한 무배당상품의 원가를 비교하여 그 초과분을 미래 배당수급권의 구입(the purchase of a right to annuity dividend)으로 처리하여야 한다[56].

그러나 연금보험상품의 실제 내용이 여전히 거의 모든 위험을 기업이 떠맡고, 보험회사로 이전된 자산과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연금채무와 관련된 보상을 기업이 가지는 경우 이를 연금보험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57]. 이러한 계약은 투자로 보아 이 상품의 해

---

53) 연금자산을 공정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시장연동가치를 이용하는 방식에 비하여 계산이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 공정가치법은 경기활황시에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연금비용을 낮추는 이점이 있지만, 경기불황시에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변동성이 있는데 비하여 시장연동가치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패턴을 보일 것이다.

54) [부록Ⅴ]의 '연금회계용어' 참조.

55) "연금자산이란 일반적으로 급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자산과 구분되고 신탁형태로 운용에 제약이 가해진 주식, 채권, 그리고 기타 투자상품들이다・・・다른 목적으로 기업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신탁형태로 분리되어 운용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자산은 비록 이들 자산이 급부제공을 위하여 사용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연금자산은 아니다." SFAS 87, para 264., [부록Ⅴ] '연금회계용어' 참조.

56) SFAS 87, pars.58-61.

약환급금액(cash surrender value)의 계산이 가능할 경우 그 가치를 이 상품의 공정가액으로 본다[58].

3. 연금의 순기간원가: 연금비용의 재무제표 반영

가. 순기간원가(net periodic pension expense)의 5가지 구성항목

SFAS 87 제정 이전의 연금회계에서는 제Ⅱ장의 '연금회계기준의 변천'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금원가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흔히 부외부채(off-balance-sheet financing)로 남겨 두는 비자산화(noncapitalization)방식을 채택한 것이다[59]. 따라서 기업이 대차대조표상에 연금에 대한 자산과 부채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기간동안 실제로 납입한 갹출금과 동 기간의 연금비용으로 보고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한하였다.

그러나 연금채무에 대한 인식이 점차 연금계약의 법적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체(economic substance)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연금채무를 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자산화

---

57) 보험회사가 관계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가보험사(captive insurer)이거나, 또는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할 합당한 근거(any reasonable doubt)가 있을 경우에도 SFAS 87에서는 연금보험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SFAS 87, para.57의 각주14.

58) 기업의 보험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있어서 환급금이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 당기 보험료는 모두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insurance expense)와 향후 환급받게 될 환급금의 증가액(increase in cash surrender value)으로 구분 처리되며, 이 때 환급금은 투자분으로서 비유동자산(noncurrent asset)으로 기록된다. 또한 배당부상품으로부터 받게 되는 배당금은 수익이 아니라 보험료에 대한 차감항목이다.

59) 부외부채란 장부(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은 부채를 말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미적립분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주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각주2. 참조.

(capitalization)방식이 대두되었고, 현재의 SFAS 87은 자산화방식과 비자산화방식의 절충형을 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60].

SFAS 87에서 한 회계기간 동안 기업은 연금의 순기간원가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순기간원가를 결정하는 핵심은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이다. SFAS 87에서는 순기간원가를 크게 다음의 5가지[61]로 나누고 있다.

(1) 근무원가(service cost)
(2)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에 대한 이자(interest on PBO)
(3) 연금자산운용의 실제수익(actual return on PA)
(4) 미인식 과거근무원가 상각(amortization of unrecognized PSC)
(5) 손익(gain or loss: G/L)

근무원가란 연금제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매 회계연도에 수행되는 근무에 대하여 새로이 얻게되는 급부부분이다([부록III-2]의 그림의 제4범주 참조). 따라서 매년 현재가치로 평가된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가 증가한다. 이러한 1년간의 미래급여반영 급부채

60) 자산화란 기업의 연금자산·부채를 재무제표상에 올바르게 측정하고, 보고하는 것이다(...measuring and reporting in the financial statements a fair representation of ...). Kieso & Weygandt(1998), pp.1097-1098. FASB는 완전한 자산화방식을 수용하지 않고, 일부 비자산화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FASB의 위원들간에도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SFAS 87의 본문 말미의 결정문 참조.

61) SFAS 87의 순기간원가의 구성항목에는 다섯 가지 외에 한 가지를 더 하고 있는데 SFAS 87의 시행으로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가 연금자산(PA)을 초과하는 금액과 가입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된 미지급 연금비용을 15년내에 상각하여 순기간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SFAS pars.20-34. 최근 국제회계기준도 연금회계의 개정으로 늘어난 이행채무를 5년내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무의 증가액이 (1)과 (2)의 근무원가와 이자원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자산과 자산-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의 관계가 (3), (4), (5)의 항목들을 결정하게 된다[62]. 위의 다섯 가지 요소들이 결합된 연금의 순기간원가는 통상적으로는 (+)이지만 (-)가 될 수도 있다. 다음에서 논의되는 각 요소들에 대한 설명은 편의상 회계기간을 1년으로 한다. [그림3]은 순기간원가의 구성항목들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3] 순기간원가의 구성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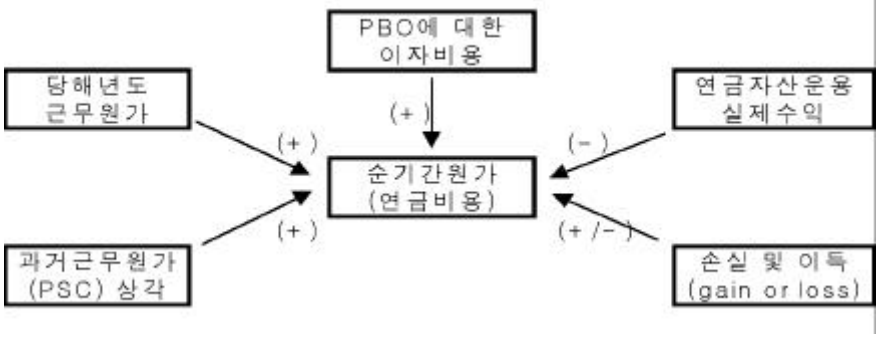

자료: Kieso & Weygandt(1998), p.1099 참조

나. 근무원가(service cost)[63]

근무원가는 재무제표의 작성 대상년도에 귀속될 급부와 관련된 원가이다. 이는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로 인한 급부의 계리적 현재가치로서 그 해의 마지막 날에 계산된다. 연금급부는 급

62) 이러한 근거에서 SFAS 87에 연금의 순기간원가를 산출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들인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 연금자산(PA), 미인식과거근무원가(unreconized PSC), 미인식순손익(unreconized net G/L) 등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는 않지만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부록III-3]의 예시자료에서는 이들 항목들을 총계정원장(gernal ledger)과 함께 비망계정(memo entries and accounts)에 동시에 나타내 전체 관계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63) 정상원가(normal cost)라고도 함

부산출공식에 따라 특정년도들에 귀속된다. 다만 급부는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와 마찬가지로 재무제표 작성일 이전의 실제 임금이 아니라 미래의 추정급여에 기초한다.

[부록Ⅲ-3]의 표를 참조하면, 제4범주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분이 당해 회계연도의 근무원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재의 근로자들 중 제일 나중에 남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퇴직할 경우 마지막부분 전부가 비용화될 것이다[64]. 매년의 근무에 대하여 최종급여의 1%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무원가는 각 근로자의 최종추정급여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현재가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에 대한 이자와 같다.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는 미래에 지급할 급부의 현재가치이고, 지급일이 가까워질수록 현재가치는 매년 증가하게 되는데, 그 현재가치의 증분이 이자이기 때문이다.

다. 연금채무에 대한 이자비용

SFAS 87의 기본가정에서 언급하였듯이 연금은 후불임금의 성격을 지니는 장기부채(long-term liability)로서 현재가치로 할인된 금액으로 기록되고, 시간경과에 따라 利子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되는 할인율(discount rate)[65]은 계리인이 설정

64) 근무원가의 결정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기업이 비용을 인식하는 데에는 보다 많은 재량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의견과 현재의 연금비용에 미래의 급여인상을 포함시키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한 회계처리라는 주장도 있다. 만일 오늘 연금이 종료된다면 누적급부에 대한 채무만이 지급될 것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ASB는 미래급부채무가 기업의 영속성이라는 관점에서(on the going concern basis) 기업의 연금채무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측정방식이며, 따라서 근무원가를 측정하는데 있어서도 이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Kieso & Weygandt(1998), p1099. 본문 제2장.나.PBO참조

65) 기업의 계속성보다는 현재시점의 채무지급에 주안점을 두는 시각에서는 이 할인율을 "청산율(settlement rate)"이라고도 부른다. 즉, 채무를

한다. 따라서 이자비용이란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가 이자발생으로 인하여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서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에 할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연간 지급된 급부에 대한 이자는 차감한다.

할인율에는 퇴직연금과 유사한 기간의 보험사 연금보험상품(annuity contracts)을 구매할 경우의 해당 보험료에 내재된 이자율(예정이자율; assumed interest rate)이나 연금급부공사(PBGC)의 예정이자율[66], 또는 연금급부 지급기간과 유사한 기간의 신용등급이 높은 고정수익보장 투자상품(high-quality fixed-income investments)[67]의 상품수익률 등이 사용되고 있다[68].

효과적으로 청산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이자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Assumed discount rates reflect the rates at which the pension benefits could be effectively settled" SFAS 87, para.44.

66) 계리인은 현재시점에서 연금보험상품을 구매할 때의 이 상품에 내재된 이자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에는 PBGC(http://www.pbgc.org)에서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이자율이 있다. 일부 연금가입 기업들은 PBGC의 퇴직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PBGC의 공시 이자율들의 평준복리이자율(a composite level rate)을 사용하고 있다. Don McGill, et al.(1996), p.634.

67) 이러한 투자상품들로서는 채권, 우선주, 부동산저당채권담보부증권(MBS),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이 대표적이며, 그 이자율은 PBGC 공시이자율이나 연금보험상품의 이자율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high quality란 통상적으로 Moody's나 S&P의 신용등급 AA이상을 의미하며, 이보다 높은 등급인 highest quality는 AAA이고, 낮은 등급은 medium 이하 등급들로 BB이하면 투자부적격이다. Don McGill, et al.(1996), p.634., 이들 상품에 대한 개략적인 특성은 F. J. Fabozi(1997) 제1장. 참조.

68) 계산기초 항목들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율로서 SFAS 87에서는 이자비용 계산과 투자수익을 예측하는 두 가지의 이자율이 있다. 즉, 급부채무의 청산과 관련된 할인율과 자산운용의 장기 예상수익률. 이자비용과 관련하여 FASB에서는 "시간경과에 따른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의 증가에 따라 이자비용이 인식되어야 하고,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를 현재가치로 측정하는데 쓰인 예정할인율(assumed discount rate)과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비용의 발생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SFAS 87, para.22.

라. 연금자산운용 실제수익

연금자산은 일반적으로 주식, 채권 및 기타의 증권과 적정수익률이 보장되면서 위험이 적은 부동산에 투자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운용되는 연금자산의 실제수익(actual return)은 연금자산의 공정가액의 등락에 따른 실현 및 미실현액을 포함한다. 아래 계산식에서 나타나듯이 실제수익은 회계기간의 기초와 기말의 연금자산의 공정가액의 변동 등(a)에서 회계기간 중에 기업이 연금기금에 납입한 갹출액과 연금기금에서 지급한 퇴직급부금을 차감한 것(b)임을 알 수 있다.

$$\text{실제수익} = \underbrace{(\text{기말연금자산} - \text{기초연금자산})}_{\text{(a)}} - \underbrace{(\text{갹출액} - \text{지급급부금})}_{\text{(b)}}$$

그렇다면 연금급부의 계산기초 항목 중의 하나인 자산운용의 장기 예상수익률(expected long-term rate)은 자산운용의 실제수익률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계리인들은 단기적인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다. 연금이 갖는 장기성(long-term)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기금의 적립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실제수익률이 아니라 예상수익률(expected rate) 또는 예정수익률(assumed rate)을 사용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수익률을 채택하고 있는 연금회계에서도 실제수익률과 예상수익률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실제수익률과 예상수익률간의 차이를 "예상외 순손익(unexpected net gain or loss)"으로 처리하여 순기간원가, 즉 연금비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69].

---

69) SFAS 87에 의하면 연금자산의 예상수익은 연금자산의 시장연동가치와 장기 예상수익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연금의 순기간원가는 연금자산의 실제수익이 예상수익을 초과하는 부분을 대변(credit)에 계상한다. 따라

연금자산의 실제수익은 순기간원가를 줄이는 항목이다. 즉 순기간원가의 차감항목이다. 따라서 연금자산(PA)의 예상수익에 사용되는 이자율이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에 적용되는 할인율과 같다면, 이들 두 요소간 순효과는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의 미적립부분에 대한 이자가 될 것이다. 이는 APB 8에서 요구하고 있는 미적립채무에 대한 이자와 같다. 그러나 이들 두 이자율, 할인율과 자산운용의 장기 예상수익률은 다를 수 있다.

마. 과거근무원가의 상각(amortization of PSC)

새로운 연금제를 시행할 때에는 시행일 이전의 과거근무(prior service)에 대하여 급부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그 시행일에 급부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연금제를 수정하는 것도 급부채무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증가를 가리켜 "과거근무원가(prior service cost: 이하 PSC)"라 한다[70]. 이는 SFAS 87의 기본 가정에서 언급된 것처럼 근로자들에게 소급적 급부(retroactive benefits)를 인정해주는 것이 향후 기업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근거에 따른 것이며, 이 경우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급부의 증가에 대하여 연금회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 연금의 순기간원가는 외형상으로는 연금자산의 실제수익을 반영하는 것 같지만, 초과수익의 대변계상처리(예상수익에 못미치는 실제수익의 경우 그 차이는 차변계상)로 상계하는 효과는 연금의 순기간원가가 사실은 연금자산의 예상수익만을 계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처리함으로써 연금자산의 실제수익이 알려지기 전에 순기간원가가 연초에 예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논의될 연금의 순기간원가항목인 "손익" 및 [부록III-3] 참조.

70) SFAS 87 시행일 이전에 설정된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액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이행채무(transition liability)으로 계상되었다. 각주61. 참조.

계리인이 산출한 과거근무원가(PSC)와 관련된 연금비용과 채무를 연금제의 도입 또는 수정시에 모두 재무제표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71]. FASB는 연금제를 수정 또는 도입한 해에 과거근무원가 전액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연금급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근로자들(covered active employees)의 미래의 잔여근무기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72].

과거근무원가 중 아직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은 부분을 연금회계에서는 미인식 과거근무원가(unrecognized PSC)라고 하며, 이를 비용화하는 과정을 미인식 과거근무원가의 상각(amortization)이라고 한다. 계리인은 사망률, 퇴직률, 장해율, 기타의 중도탈퇴율 등을 사용함으로써 현재 근로자들이 근무하게 될 미래의 근무기간을 추정할 수 있다.

통상적인 상각방법은 근로자들의 예상 평균 잔여근무년수로 균등상각하는 방법(straight-line amortization method)이 있다[73]. 이 때 상각액에는 이자가 감안되지 않고 있다. 과거근무원가에 대한 이자는 이미 총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에 근거한 이자비용 중의 일부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

71) 이론적으로 과거근무원가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1) 과거에 수행된 근무에 대한 지급이므로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에서 차감하는 방식, (2) 연금제의 시행 또는 급부확대(establishing or liberalizing the plan) 시의 시행년도의 소득(income in the year)에서 차감하는 방식, (3) 과거근무에 대하여 소급하여 급부를 인정하되 기업은 미래에 혜택을 얻을 것이므로 미래 사업기간에 대하여 상각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Don McGill, et al.(1996), p.626.

72) 미국은 근무년수상각법(years-of-service amortization method)에 의하여 연금대상 근로자들의 예상 평균 잔여근무년수에 걸쳐서 비용으로 안분하는데 반하여, 독일에서는 과거근무원가를 즉각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네델란드에서는 즉각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주주지분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Kieso & Weygandt(1998), p.1103.

73) 총 예상근무년수와 과거근무원가의 상각에 대한 간단한 산출 例는 [부록Ⅲ-3] 참조.

바. 손익의 상각: 범위초과분 상각방식

순기간원가의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관심이 크고 통제가 불가능한 부분이 바로 "예상하지 못한 손익(unexpected gain or loss)" 부분이다. 손익 항목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1)연금자산(PA)의 갑작스런 시장가치의 변동에 따른 예상수익(expected return)과 실제수익(actual return)의 차이와 (2)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에 영향을 주는 사망률, 승급률 등과 같은 계산기초의 예상치와 경험치와의 차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연금원가에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변동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는 계산기초의 변화를 손익으로서 다루지 않는 기금적립요건(funding requirement)이나 전통적인 계리관행과 다르다.

연금회계에서는 해당 회계기간 내에 이루어진 모든 변동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그 변동 폭을 평준화(smoothing)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기업은 연금자산과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의 예상외 손실과 이득이 "미인식 순손익(unrecognized net G/L) 계정" 내에서 손익이 서로 상쇄(netting)되도록 하여 손익규모가 커지지 않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년도 초에 미인식 손익계정의 기초잔액(beginning balance)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근로자들의 평균 잔여근무년수로 나누어 연금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74]. 이렇게 함으로써 손익의 인식이 상당 정도 이연

---

74) SFAS 87에서는 변동 규모를 연금자산(PA)의 공정가액 또는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 중에서 큰 쪽의 10%범위까지로 줄이도록 하고 있다. 즉, 해당 회계기간의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의 기초액과 연금자산의 기초액 중 큰 금액의 ±10%를 범위로 산정하여 미인식손익계정의 잔액과 비교한 후 그 범위를 초과하는 잔액을 상각하고, 재무제표에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각방식을 "범위외상각 또는 범위초과분 상각(corridor amortization)"이라 하는데, 이 범위는 확실한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다. 해당 회계년도의 상각액 산출은 연금급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근로자들의 평균 잔여근무기간으로 그 범위

됨으로써 원가의 변동 정도가 수 년에 걸쳐 평준화(smoothed out)되는 것이다. 그러나 발생손익 중에서 연금운영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일회성 손익은 이연시켜 상각하지 않고 즉각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요약하면, 예상외 손익의 처리는 자산의 경우 예상수익률에 맞춰 평준화하고 있으며, 회계기간 기초의 예상외 손익은 범위(corridor)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각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자들의 예상잔여근무년수에 걸쳐 상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연금의 순기간원가의 산출 등에 대하여 실제 수치를 이용한 사례를 [부록Ⅲ-3]에 담았다.

4. 연금채무의 재무제표 반영과 공시사항

가. 최소연금채무(minimum pension liability)

최소연금채무에 대한 기본 출발점은 기업의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가 연금자산의 공정가액(PA at fair value)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그 초과분 만큼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계속기업(going concern)이라면 미래 급여수준에 따른 채무를 청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될 수 있어야 하고, 급부채무의 극히 일부분만을 인식하는 것은 현재의 급여수준에 따른 채무도 청산하지 못할 것이며, 기업회계의 기본가정인 계속기업의 개념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FASB에서는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

초과분을 나누어 얻는다.

대신에 누적급부채무(ABO)를 사용하여 누적급부채무가 연금자산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만큼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누적급부채무(ABO)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당장 채무를 청산하여야 할 경우 미래의 추정 급여가 아니라 현재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채택하고 있는 연금제도가 수정되거나 계산기초의 변화로 인한 손실(actuarial loss)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은 최소한 누적급부채무(ABO)의 미적립부분 만큼은 채무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산가치가 누적급부채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추가적인 부분을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은 회계의 보수주의에 의하여 허용하고 있지 않다.

한편 기업이 연금기금에 납입하는 갹출액은 순기간원가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간의 누적된 차이는 제Ⅱ장의 APB 8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의 대차대조표에서 갹출액이 순기간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급연금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작은 경우에는 발생연금원가(미지급 연금비용: accrued pension cost)라는 부채로 계상한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반영할 연금비용(pension expense) 중 기업이 당해 회계기간에 연금기금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연금비용은 발생연금원가라는 채무로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계산된 최소연금채무 중 미지급 연금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연금채무(additional pension liability)로 재무제표에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나. 대차대조표에 반영될 연금채무: 추가연금채무

추가연금채무를 재무제표에 반영할 때에는 "미인식 과거근무원가(unrecognized PSC)"에 상당하는 부분까지는 무형자산(intangible

asset)[75]으로 인정하여 "이연연금원가(deferred pension cost)계정"을 상대계정으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미인식 과거근무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미인식 과거근무원가 초과분(excess of additional pension liability over unrecognized PSC)계정"을 상대계정으로 하여 회계처리한다.

추가연금채무에 대응하여 이연연금원가 계정을 설정한 것은 SFAS 87의 기본가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금제도의 수정이 기업의 영업권(goodwill)을 증대시켜 향후 기업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는 근거에서 미인식 과거근무원가에 상당하는 추가연금채무를 무형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가연금채무 중 미인식 과거근무원가를 상회하는 부분은 퇴직자의 장수(longevity) 등에 의한 급부의 증가로 나타나는 계산기초상 손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는 무형자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초과분을 반영하는 '미인식 과거근무원가 초과계정'은 주주지분의 차감계정(contra account of stockholders' equity)이라는 성격을 지닌다[76]. SFAS 87에서는 추가연금채무를 매 회계연도마다 관련 계정들과 함께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IAS)에서는 이러한 최소연금채무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연금채무를 평가하는데에 있어서도 평가주기가 일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는 매년 연금채무를 재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대략 3년주기로 재평가하는 경우가 많다[77].

---

75)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은 SFAS 87 시행일 이전의 미인식 과거근무원가와 미인식 순채무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추가채무가 이 금액을 초과하면, 대차대조표상의 순가치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76) 이 방식은 AFS증권(available-for-sale securities)의 공정가액 변동분인 미실현 손실(unrealized holing loss)을 처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AFS 증권의 평가손익이 일시적 손익이면,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대차대조표의 누적기타포괄소득(accumulated other comprehensive income)에 반영된다. 참고로 AFS 증권은 우리나라의 상품유가증권에 해당하는 HFT(hold for trading) 증권이나 만기보유(held to maturity: HTM)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증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일부 문헌에서는 AFS와 HTM 증권을 비유동화증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다. 기업의 재무제표상 공시사항

SFAS 87에서는 기업의 연금제도, 기금적립, 회계처리에 대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에 광범위한 공시사항들을 기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78]. 순기간원가는 근무원가 항목과 이자, 해당 기간의 자산운용의 실제수익 및 기타 항목의 순액 합계로 나뉘어져 있다. 급부채무를 측정하는 3가지 방식을 모두 나타내야 한다. 연금기금의 기금적립상태와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보고된 금액을 비교하는 명세표([표 3] 참조)도 요구된다. SFAS 87에서는 이들 공시관련 서류들을 부록에서 예시하고 있다[79].

이와 같이 연금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의 공시가 필요한 것은 순기간원가의 산정이 급부산출공식, 기금적립정책, 자산보유 유형, 모든 기간동안의 회계정보들간의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의 영향과 그 효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금적립정책이나 보유자산에 대한 공시는 해당 기업의 현금흐름과 순기간원가간의 차이 뿐만 아니라 향후 현금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해당 기간의 순기간원가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공시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순기간원가의 결정과 기간별 변화를 이해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표4]는 기업의 공시사항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

77) Kieso & Weygandt(1998), p1111., Carrie Bloomer, ed.(1996), IAS 19. 참조.

78) 적격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반드시 연금운영종합보고서(Summary Plan Descriptions; SDPs)를 감독기관과 가입자들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성주호 · 김진억(1998), p.67 주35. 현재 FASB에서는 공시사항에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검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79) SFAS 87, Appendix D "Illust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및 이 장의 [부록III-3] 참조. 연금기금에 대한 공시사항은 제IV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표3] 연금조정명세표(pension reconciliation schedule)

급부채무의 현재가치:	
- 확정급부채무(VBO)	$(××××)
- 누적급부채무(ABO)	$(××××)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 기말현재	$(××××)
연금자산(PA at fair value), 기말현재	×××
기금적립상태(자산초과채무: PBO-PA)	(×××)
미인식 과거근무원가(PSC)	××
미인식 순손익(G/L)	××
발생(미지급) 또는 선급 연금원가(비용)	(×××)
최소채무를 인식하기 위한 조정	(××)
대차대조표 계상 연금채무	$(×××)

[표4] 재무제표상의 공시사항 요약

구분	내 용
재무제표	1. 발생(선급) 연금원가: 연금비용 2. 추가연금채무
주석공시	1. 연금제의 개요: 가입근로자군, 급부형태, 기금적립정책, 보유자산형태, 특이사항 등 2. 순기간연금원가의 구성 3. 기금적립상태와 대차대조표간 조정: (1)급부에 가용한 자산, (2)PBO(ABO, VBO 병기), (3)미인식 PSC, (4)미인식 G/L, (5)추가연금채무, (6) (1) (5)를 결합한 결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발생(선급)연금원가(비용) 4. 할인율(가중평균), PBO 계산에 사용된 급여증가율, 연금자산의 가중평균 장기 예상수익률

* [부록Ⅲ-4] 연차보고서에 나타난 공시사항 참조

5. 복수기업 연금제와 연금제의 청산

가. 한 기업의 복수가입과 복수기업 연금제

한 기업이 2개 이상의 확정급부형(DB) 연금기금들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 SFAS 87에서는 기업이 재무제표상의 순기간원가, 자산, 부채 항목들을 각 연금별로 따로 따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재무제표에서는 이들 연금들의 금액을 결합하지만 서로 상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연금에서 연금자산이 누적급부채무(ABO)를 초과한다고 해서 이 초과분을 가지고 다른 연금의 미적립 누적급부채무를 감소시킬 수는 없다. 또한 한 연금의 선급연금원가가 또 다른 연금의 미적립 발생연금원가를 상쇄하지도 않는다. 공시목적상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확정급부형 연금은 통합되거나 그룹별로 통합될 수도 있지만, 미적립 누적급부채무를 가진 연금은 기업의 대차대조표상 보고금액과 연금의 기금적립상태를 비교하려는 목적상 다른 연금과 통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80].

한편 연금기금에 둘 이상 기업이 가입되어 있는 복수기업 연금제의 경우, SFAS 87에서는 이러한 연금기금을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그 기준은 연금자산이 기업별, 근로자별로 구분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이다. 즉 연금기금의 각 기업별 갹출액을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급부에만 사용하는 연금기금은 단일기업 연금기금(single-employer plan)의 결합체로 간주한다. 통상 이들 연금기금의 주 목적은 관리비용을 줄이고, 자산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금기금을 SFAS 87에서는 개별관리 복수기업 연금제(multiple-employer plans)로 규정하고 단일기업 연금제로 취

80) SFAS 87, pars.55-56.

급한다.

반면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multi-employer plans)는 각 기업별 갹출금을 각각의 기업에 속한 근로자들에게 구분하여 급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81]. 통상적으로 하나 이상의 단체교섭(one or mor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에 의하여 형성되는 이러한 기금은 경영진과 근로자 대표로 이루어지는 신탁위원회에 의하여 관리되며, 공동신탁연금제(a joint trust or union plan)로 불리기도 한다.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에 갹출금을 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순기간원가의 회계처리 요건은 일반적으로 확정갹출형(DC) 연금제에 관한 요건과 유사하다[82].

나. 연금기금 가입자로서의 보험회사: SSAP 8

기업회계기준(GAAP) 외에 감독회계기준(SAP)의 적용도 받고 있는 보험회사가 자사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를 운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어떠할까?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도 SFAS 87이 적용된다. 다만, 감독회계기준에 따를 때는 기본적으로 SFAS 87을 적용하되, 연금수급권이 없는 근로자들을 제외한 연금채무의 측정을 요구하는 등 일부 수정을 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최근 공표된 보험회사의 연금제에 대한 보험감독회계기준은 SSAP 8(Statement of 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 SSAP No.8, "Pensions")[83]이다. [부록Ⅲ-5]에 SSAP 8의 개정사항 요약문을 실어 놓았다.

---

81) SFAS 87, pars.67-69(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 pars.71(개별관리 복수기업 연금제) 및 [부록Ⅴ] '연금회계용어' 참조.

82) 다만, 이 연금제에서 탈퇴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SFAS 5, "Accounting for Contingencies"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83) NAIC(http://www.naic.org)은 현재 SAP의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기존의 감독회계기준서의 개편 및 내용개정 등이 진행중이다.

다. 연금제의 청산: SFAS 88

여기서 설명할 연금제의 확정급부 연금제의 감액과 청산 등에 대한 사항은 지금까지 논의해 온 SFAS 87과 다르다. 확정급부형(DB) 연금제에서는 기업이 연금채무에 대한 실질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므로 연금부채를 초과하는 연금자산도 기업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ERISA에서는 연금참여자인 근로자들이 급부를 지급받고, 연금기금이 중단되기 전에는 기업이 그 초과자산을 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980년대 많은 기업들이 연금기금을 청산한 후 남은 초과기금을 환수하여 기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84]. 합법적인 방법이었지만, 연금기금의 불안정성 등 현실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비판을 야기했다. 이에 연방법에서는 기업이 환수하여 얻은 순이득에 대하여 20% 50%의 특별세(excise tax)를 부과하게 되었고[85], 회계상으로는 자산환수(asset reversion)가 일어났을 때 기업이 어떻게 이득을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86]. 연금제가 청산되는 등의 특수한 사건들이 발생하였을

---

84) 과연 초과자산이 기업의 몫이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초과자산은 근로자의 몫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가상승과 급부증가의 가능성이 기업의 초과자산 환수로 줄어들게 되고, 기업은 초과자산을 그 물가상승 보전 또는 급부증가분에 대하여 사용하길 꺼리게 된다는 논리다. 미국 노동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내 연금수령자의 30%만이 물가에 연동하여 급부가 증가되었고, 그 결과 1979년이후 연금수령자들의 구매력은 50% 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Kieso & Weygandt(1998), p.1124, 각주24., http://www.prudential.com (원전: USA Today Hotline, Nov.21, 1997).

85) 다른 나라의 경우도 확정급부형 가입기업의 자산환수 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본문의 제Ⅳ장 '세제'부분 참조.

86) 여기에 대한 논의는 사안별로 다소 복잡하다. 기존 확정급부형(DB)에서 새로운 확정급부형(DB)으로 바뀐 경우 이득을 인식하여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논의다. 한편 확정급부형(DB)에서 확정갹출형(DC)으로 바뀐 경우에는 현재 대다수가 이득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다른 경우에는 향후 10년이내에 상각한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회계처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때는 연금원가의 일부를 SFAS 87에서처럼 이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액 인식이 필요하고, 이를 인식할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SFAS 88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SFAS 88에서는 확정급부형 연금제에서의 연금중단 또는 감액(plan termination or curtailment), 연금보험상품의 구입 또는 일시금(a lumpsum ditribution)에 의한 급부채무의 청산과 특정 중단급부에 대한 준비금(the provision of certain termination benefits) 등과 같은 사건의 효과를 청산 발생시에 기업의 재무제표에 나타내도록 요구하고 있다[87]. 또한 이들 사건에 대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상에서 즉시 인식하여야 할 손익들을 기술하고 있다[88]. 이러한 요건들은 SFAS 87의 요건들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SFAS 87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급부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연금기금이 연금참여자들에게 일시금 지급 또는 무배당부 연금보험상품을 구입하여 줌으로써 연금기금의 의무가 해소되면 청산(settlement)이 일어나게 된다[89]. 다만, 배당부(participating) 연금보험상품을 구입하는 때에는 기업이 더

있다. Kieso & Weygandt(1998), pp.1123-1124.

87) 연금관련 국제회계기준, IAS 19도 최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식기준이 개정되었다. 다음 절의 '국제회계기준' 참조.

88) 현 연금제 청산에 대한 사항은 노동부(DOL)와 IRS, PBGC의 통합지침서(Joint Guidelines)가 기준이 되고 있다. 회계기준에 있어서는 APB 8에서 청산에 따른 이득을 10년 내지 20년에 걸쳐서 인식하도록 하였던 반면에, SFAS 88에서는 기업이 그 이득을 즉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업의 자산환수를 촉진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냈으나,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전체 환수액에 대한 정규적인 소득세 부과말고도 1986년 세제개혁법에 따라 특별세 부과가 이루어짐으로써 세후 이득이 크게 줄어들게 만들어 놓았다. 보다 자세한 이득회계처리에 대해서는 W. Mercer. Inc.(1988), p.14-17. 참조.

89) SFAS 88에서는 청산을 다음의 3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1) 취소할 수 없는 행위로서의 거래(a transaction that is an irrevocable action), (2) 연금급부채무에 대한 기업의 일차적인 책임을 면제시키는 거래, (3) 부채와 관련된 중요한 위험과 청산을 유효하게 하는데 사용될 자산들을 제거하는 거래. SFAS 88, para.3.

이상 연금과 관련된 거의 모든 위험이나 보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청산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배당부 연금보험상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청산하려면 이와 유사한 무배당부 연금보험상품의 원가를 초과하는 보험료 부분을 미래배당이라는 자산에 대한 투자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일시금 지급 또는 연금보험상품을 구입하여 개개인에 대한 급부채무를 해소하는 것도 청산이 되지만, 연간 총 청산액이 그 해의 순기간원가 항목인 근무원가와 이자의 합계보다 작다면 기업은 청산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대규모 연금에서 일상적인 급부배분에 따른 청산은 이를 청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소규모 연금에서는 개별 가입자의 퇴직은 청산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감액(curtailment)이란 현재의 가입자들이 향후에 얻게될 것으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급부를 상당한 정도로 줄이는 사건이다. 근로자들의 대량 중도탈퇴를 야기하는 공장폐쇄와 같이 향후 예상 근로기간을 상당한 정도로 줄이는 것은 연금제의 감액을 초래한다. 미래에 발생할 급부를 줄이거나 제거해 버리는 연금제의 수정 또한 감액이다. 한편 연금제의 중단은 통상적으로 감액과 청산 모두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중단은 이들 두 사건 모두의 요건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연금제에서는 공장폐쇄와 같은 특정 사건으로 야기된 특별중단급부(special termination benefits)를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기업들은 단체협약(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에서의 조건으로 연금제도 밖에서 그러한 급부를 제공하여 왔다. SFAS 88은 계약상 중단급부의 정의를 두 가지 형태로 내리고 있고, 그 회계처리 요건을 정하고 있다. 조기 퇴직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일부 기업들은 소위 한정기간(window period)이라 불리우는 정해진 기간 동안 근로

자들이 퇴직하면 해당 근로자들에게 특별중단급부를 제공하여 왔다. SFAS 88은 이들 특별중단급부에 대한 회계처리를 정하고 있다[90].

6. 국제회계기준과 비교: U.S. GAAP vs. IAS[91]

가. 연금채무와 자산의 측정

IAS 19는 발생급부방식과 미래급부방식 모두의 사용을 허용하여 오다가 1998년 개정으로 미래급부방식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FASB의 SFAS 87에서 얻는 결과와 비교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IAS 19가 여러 연간 평가치들에 근거한 측정과 장기적인 계산기초들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SFAS 87에서는 당기 시장에 근거한 계산기초의 사용과 연간 평가치를 요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IAS 19를 따르는 기업과 SFAS 87을 따르는 기업간에 유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AS 19에 의거 대차대조표상에 인식되는 채무는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과 SFAS 87만이 채택하고 있는 최소채무조항으로 인하여 SFAS 87을 적용한 채무와

90) SFAS 88 이전의 "특별중단급부" 회계처리는 SFAS 74에서 정하고 있었다.

91) 이 절의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 문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개정전 IAS 19와 SFAS 87/88간 비교문헌의 출처는 Carrie Bloomer ed.(1996), 개정 IAS 19의 출처는 IASC (http://www.iasc.org.uk, 1998). 1994년 11월 국제회계기준원회(IASC)는 퇴직급부 및 근로자에 대한 기타 급부의 원가에 대한 프로젝트를 작업프로그램에 추가하여 개정전 IAS 19, "퇴직급부원가(Retirement Benefit Costs)"의 기존 요건을 재고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퇴직 및 기타 근로자 급부에 따른 자산, 부채, 소득과 비용을 인식, 측정하고,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로 1998년 1월에 개정된 IAS 19, "근로자급부(Employee Benefits)"는 1999년 1월 이후 보고되는 재무제표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IAS 19는 미국의 SFAS 87, 88에 근접한 기준들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를 수 있다.

한편 SFAS 87에서는 최소채무를 측정하고 연금의 적립상태를 공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금자산(PA)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AS 19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연금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자산이 연금기금에 의하여 보유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두 기준에 의한 연금자산의 측정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IAS 19에서는 연금자산의 구성에 대한 아무런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반면, SFAS 87에서는 연금자산의 구성 및 운용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담고 있다.

나. 연금비용의 측정

기업이 약속하는 급부액의 총액과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원가는 정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지만, 적정 미래사건(퇴직)의 추정과 급부공식을 이용하여 추정될 수는 있다. 이 원가를 IAS 19와 SFAS 87 모두 근무원가(service cost)로 인식하고 있다. IAS 19에서는 당기 근무원가를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 이 과정은 SFAS 87과 유사하다. 그러나 SFAS 87에서는 연금의 순기간원가를 5가지 구성항목[92]으로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고, 근무원가는 그 구성항목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IAS 19에서는 순기간원가의 다른 항목들을 별개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모든 구성항목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며, 어디에 보고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IAS 19에 따라 보고, 공시된 연금원가는 SFAS 87에 따라 결정된 것들과 다를 수 있다. 이제 이들 각각의 항목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92) 본문의 분석에서는 생략하였지만, SFAS 87이라는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된 이행채무(transition liability)의 상각까지 감안하면 6가지 항목이다.

1) **이자비용**(interest cost)

IAS 19에서는 이자비용을 명시하지 않고, 연금채무가 현가에 근거한 측정치라고 언급함으로써 이를 암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SFAS 87은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를 현재가치로 측정하는 데에는 예정이자율과 동일한 이자원가의 발생을 요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간의 이자비용을 "시간경과에 따른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의 증가"로 정의하여 순기간원가를 구성하는 한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IAS 19에서는 이자비용을 어떻게 보고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따르는 기업은 재무제표에 연금원가의 이자항목을 미국 회계기준에서처럼 연금의 순기간원가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 이자비용의 일부분으로 나타내고 있다.

2) **연금자산에 대한 수익**(return on plan assets)

SFAS 87에서는 연금자산의 장기 예상수익률이 투자된 또는 향후 투자될 기금의 평균 예상수익률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IAS 19에서도 동일하지만 원칙이 아닌 예시로 제시되고 있어 기업이 SFAS 87을 채택하느냐 IAS 19를 따르느냐에 따라 연금자산의 예상수익률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수익률이 유사한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간에도 상당히 다를 수 있다.

3) **과거근무원가**(PSC)

IAS 19에서는 연금제의 수정이 기존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 근로자들의 예상 잔여근무기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동일한 상각방식을 강제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SFAS 87에서는 현재의 개개 근로자들의 개별 미래근무기간

에 대하여 과거근무원가를 상각하도록 하고, 이 상각방식보다 빠른 상각(균등상각방식(straight line method) 등)도 공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한 허용하고 있다.

한편 연금제 수정이 퇴직근로자(retired employees)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IAS 19가 연금제 수정의 영향을 수정이 이루어진 해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나, SFAS 87에서는 그 영향을 그들의 예상여명에 걸쳐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퇴직자의 급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인플레이션 기간에 상당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4) 손익(gains and losses)

SFAS 87은 연금자산과 부채에 관련된 계리적 손익(즉, 계리상 가정의 변화 뿐만 아니라 예정치와 실제치와의 차이로 인한 손익)을 상각하는데 범위초과분 상각방식(corridor approach)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손익의 인식에 대한 범위초과분 상각방식은 상각을 최소수준으로 하게 하지만 기간별 이익과 손실 모두에 대하여 상각방식이 공시되고 일관성있게 사용되는 한 보다 빠른 다른 상각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개정 IAS 19에서도 SFAS 87과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SFAS 87에서는 손익이 발생한 기간 직후부터 손익의 일정부분을 상각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전 IAS 19에 의하면, 손익의 상각은 손익이 측정된 연도부터 상각이 이루어지는 차이가 있었다[93]. 따라서 3년에 한번씩 평가가 이루어지는 IAS 19에서는 상각이 최대 3년간 이연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IAS 19에서는 연금제도의 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거나, 하나 이상의 가정이 수정되어야 할 사건이 있게 되면 보다 자주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다.

93) 이에 대한 IAS 19의 개정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다. 복수기업 연금제와 연금제의 청산과 감액

IAS 19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들 중 일부는 SFAS 87/ 88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multi-employer plans)와 청산(settlement)에 대하여는 그 의미가 크게 다르다. IAS 19에서는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multi-employer plans)가 국가, 산업 또는 기타 개별관리 복수기업 연금제(multiple employer plans)에서의 퇴직급부 지급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에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SFAS 87에서는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의 특성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에 대한 회계 요건은 두 기준 모두 유사하나, IAS 19에서는 복수기업 연금제가 개별관리냐 아니면 통합관리이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FASB와 동일한 수준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FASB의 정의에 근거한 개별관리 복수기업 연금제가 IAS 19에서는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로 처리됨으로써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청산(settlement)에 대하여 개정전 IAS 19는 청산손실(losses on settlement)을 청산발생 가능성이 클 때(probable) 인식하고, 청산이익(gains on settlement)은 청산이 발생하였을 때 인식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 IAS 19는 SFAS 88과 같이 청산 손익을 청산 발생과 동시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연금제의 중단이나 감액에서도 IAS 19와 SFAS 87은 유사하다.

라. 공시

확정각출형(DC) 및 확정급부형(DB) 연금제에 대한 SFAS 87의 공시요건은 IAS 19보다 세부적인 것이 일반적 특징이다. IAS 19는 연금 기간원가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SFAS 87에서 요

구하고 있는 순기간원가의 구성항목은 아니다.

또한 SFAS 87에서는 연금기금의 기금적립상태와 대차대조표상에 인식되는 금액간 조정, 그리고 2개 이상의 연금기금에 가입한 기업의 경우 과도적립된 연금과 과소적립된 연금에 대하여 별개의 조정명세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IAS 19에서는 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금자산의 공정가치와 연금급부의 계리적 현재가치(이들 자산과 급부간의 차이는 연금의 기금적립상태를 반영)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공시는 모두 가장 최근의 평가일 현재로 하여야 하지만, 이는 재무제표 작성일로부터 3년 전일 수도 있다.

SFAS 88에서는 연금제의 감액과 청산, 중단에 대한 기술 뿐만 아니라 그 발생으로 인식된 손익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IAS 19에서는 과거 기간과의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까지만 그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에서 2년 연속 유사한 사건(중단, 감액, 청산)이 발생하면, IAS 19에서는 제2차년도에는 아무런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 반면에 SFAS 88에서는 2개년도 모두 공시하여야 한다.

더욱이 SFAS 87에서는 관계자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와 정기적인 연금제의 수정을 하기로 한 실질적인 이행조항(substantive commitments)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IAS 19에는 이와 유사한 공시요건들이 없다. 또한 SFAS 87에서는 해외연금제의 적립상태의 공시를 국내연금제의 공시와는 별개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94] IAS 19에는 없다.

94) [부록Ⅲ-3] 연차보고서에 나타난 연금회계의 공시사항 중 "Non-U.S. Plan" 참조.

[부록Ⅲ-1] SFAS 87 기본가정과 그 영향(accounting impact)

기본가정 (Underlying Propositions)		SFAS 87에 대한 영향 (Accounting Impact)
연금의 성격	후불임금 (deferred compensation)	○ 현재는 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그 대가로 퇴직후 연금 수령; 기업의 궁극적 연금지급책임 → 필요 갹출액의 납입만으로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 → 적립부족분의 기업 대차대조표상 인식 → 최소연금채무 및 추가연금채무
	개개인에 대한 채무(obligations to individuals)	
연금기금 성격	무한지속성 (indefinite continuance)	○ 연금수급권 획득자에 대한 급부만이 아니라 연금기금의 지속성에 따라 수급권을 획득하게 될 현재의 수급권 미취득자의 급부도 인식 → 기업의 연금채무기준: PBO(/ ABO)
	기업과는 별개의 주체 (independent entity)	○ 기업과 연금기금은 각각 독립된 개별주체 → 기업의 재무제표에 연금자산과 부채계상 부적절; 연금자산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 다만, 기업은 연금자산을 초과하는 연금채무는 대차대조표에 반영
급부획득·소급	연금급부의 비례 획득 (earned proportionately)	○ 총급부의 일정 비율로 매년 획득(unit credit) → 임금을 벌어들이는 것과 동일 비율로 획득 → 총 연금을 임금의 일정비율로 귀속 → 평준화된 순기간원가의 비율 배분
	소급급부의 미래가치 (future benefit)	○ 급부의 미래가치 인식 → 기업의 미래가치는 무형자산으로 인식 → 과거근무급부를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소득에서 차감; 미래 근무기간에 걸쳐서 상각하여 비용으로 인식

[부록Ⅲ-2] 가상 例를 이용한 연금채무의 분류[95)]

계리인의 평가에 의해 기업의 연금채무의 현재가치는 20이다. 이 경우 연금채무는 크게 4가지 범주로 구성된다.

< 기업의 총 연금채무의 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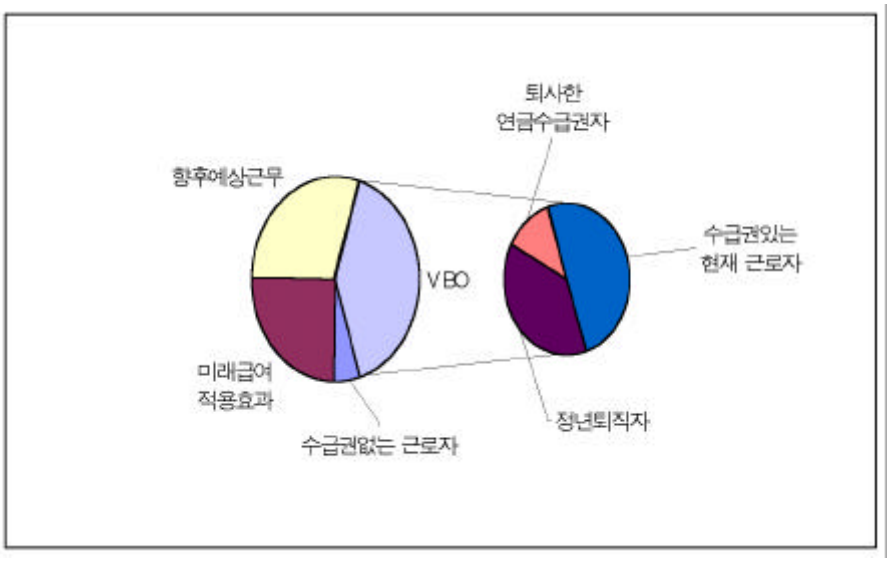

< 연금채무의 세부 분류 >

범주	연금 채무 항목	금액	연금채무분류			누계
1	정년퇴직자	3				
	퇴사한 연금수급권자	1				
	연금수급권 있는 근로자	4	VBO			8
2	연금수급권 없는 근로자	1		ABO		9
3	미래급여의 적용에 따른 과거근무급부의 증가	5			PBO	14
4	향후 예상 근무	6				20

95) 제시된 사례는 W. Mercer Inc.(1988)에서 제시된 예를 인용한 것이다.

제1범주는 이미 퇴직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급부,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고 난 후 회사를 퇴직한 사람에 대한 급부, 연금수급권자로서 현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급부로 구성된다. 이는 본문에서 설명한 확정급부채무(VBO)에 해당되는 급부이다[96]. 제2범주는 근무기간이 아직 수급권 획득기준에 미달하여 연금수급권이 없는 근로자들에 대한 급부로서 위의 제1범주와 제2범주를 합한 것이 누적급부채무(ABO)이다[97]. 제3범주는 미래급여수준을 적용할 때의 미래급여반영급부(PBO)를 의미하는 것이다.

매 근무기간에 대하여 최종급여의 1%를 급부로 제공하는 연금으로서 10년 근무경력의 45세 甲이라는 근로자의 연간급여가 20,000이고, 그의 최종 급여가 50,00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 근로자 甲은 2,000(20,000*10%; 10%=1%*10년)의 급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는 <기업의 총 연금채무의 구성>에서 보듯이 연급수급권을 가진 현재 근로자의 급부(active vested)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미 얻은 10%의 급부에 예상 최종급여 50,000을 적용하는 경우의 급부는 5,000이 된다. 추가분 3,000은 예상 최종급여의 증가가 평가일 이전의 급부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기업의 총 연금채무의 구성>에서 미래급여 적용효과(effect of future salary on past service)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제1범주에서 제3범주까지의 급부가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근무(future service)에 따른 급부부분이 미래에서 현재로 옮겨 오고 이자가 발생하면서, 매년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가 증가한다. 제4범주의 채무는 근로자 甲이 지금부터 퇴직할

---

96) 1967년이후 APB 8에 의거하여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97) 1980년에 제정된 FASB 36에 의거하여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였고, FASB 87은 누적급부채무를 단순히 주석으로 공시할 것이 아니라 연금자산과 비교하여 적립부족액을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이 장의 '추가연금채무'부분 참조.

때까지 향후 근무함에 따라 매년 최종급부의 1%를 추가로 얻게 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매년의 근무원가(service cost)가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 가지 연금채무에 대응하여 보면, <연금채무의 세부 분류>에서와 같이 확정급부채무가 '8', 누적급부채무가 '9',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가 '14'가 된다.

[부록Ⅲ-3] 가상 例를 이용한 퇴직연금의 회계처리[98)]

FY	"Vision 21"회사의 퇴직연금제 시행
1999	○ 1999.1.1 확정급부형 연금제도 시행 ○ 1999년 주요내용 - 연금자산(PA) $100,000 -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 $100,000 - 1999년 연간근무원가 $9,000, 연금자산 연간실제수익 $10,000 - 연금기금 납입액(보험료; 적립액) $8,000 - 퇴직자 연금급부금 $7,000 - 할인율(청산율) 10%, 예상수익률 10%
2000	○ 2000.1.1 연금제도 내용 일부수정 -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과거근무급부인정: $80,000; 일부 당년도 상각 ○ 2000년 주요내용 - 2000년 연간근무원가 $9,500, 연금자산 연간실제수익 $11,100 - 기금납입액 $20,000 - 퇴직자 연금급부금 $8,000 - 할인율 10%, 예상수익률 10%
2001	○ 2001년 주요내용 - 2001년 연간근무원가 $13,000, 연금자산 연간실제수익 $12,000 - 기금납입액 $24,000 - 퇴직자 연금급부금 $10,500 - 할인율 10%, 예상수익률 10% - 2000년 연금제도 수정에 의한 과거근무원가 일부 상각 - 계리기초의 변화로 기말의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 증가 $265,000

98) Kieso & Weygandt(1998)의 연금관련 예시를 옮겨 본 것이다.

[부록Ⅲ-4] 기업 연차보고서에 나타난 퇴직연금 공시사례

1) Marsh & McLennan[99)]

5. Retirement Benefits

The Company maintains pension or profit sharing plans for substantially all employees.

Defined Benefit Plans—U.S.: The Marsh & McLennan Companies Retirement Plan provides benefits to eligible U.S. employees. The benefits under this plan are based on the participants' length of service and compensation, subject to the Emp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and Internal Revenue Service(IRS) limitations. The funding policy for this plan is to contribute amounts at least sufficient to meet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U.S. employee benefit and tax laws. The plan assets are invested primarily in listed stocks, corporate bonds and U.S. Government Securities. ・・・

The components of pension cost for the U.S. defined benefit plans are as follows:

For the Three Years ended December 31, 1995 (In millions of Dollars)	1995	1996	1997
Service cost	25	26	23
Interest cost on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56	51	47
Expected return on plan assets	(73)	(70)	(59)
Net amortization	(7)	(2)	(5)
	1	4	6

99) Marsh & McLennan, Annual Report 1995, pp.37-38, note 5.

The actual returns on plan assets were $167.2 million, $4.3million and $95.1million for 1995, 1994 and 1993, respectively. These returns reflect the general securities market conditions experienced in the respective years.

The funded status of the U.S. defined benefit plans and actuarial assumptions used to measure the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are as follows:

December 31, 1995 and 1994 (In millions of Dollars)	1995	1994
Actuarial present vale of 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Vested	663.4	530.8
Nonvested	19.9	18.2
	683.3	549.0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783.8	655.9
Fair value of plan assets	841.1	695.2
	57.3	39.3
Unrecognized net gain from past experience different from that assumed	- 91.2	- 90.0
Unrecognized Prior service cost	27.7	34.1
Unrecognized SFAS No.87 transition amount	- 41.5	- 46.1
Accrued pension liability	- 47.7	- 62.7
Actuarial assumptions:		
Discount rate	7.50%	8.75%
Weighted average rate of compensation increase	4.25%	6.00%
Expected long- term rate of return on plan assets	10.00%	10.00%

In 1995, the discount rate used to value the liabilities of the U.S. defined benefit plans was decreased to reflect current interest rates of high quality fixed income debt securities. Assumptions, including projected compensation increases and potential cost of living adjustments for retirees, were also revised to reflect current expectations as to future levels of inflation. The increase in the 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and the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reflects, in part, the net impact of the change in these assumptions.

Defined Benefit Plans—Non-U.S.: The company maintains various plans that provide benefits to eligible non-U.S. employees. The benefits under these plans are based on the participants' length of service and compensation. The funding policy of these plans is to contribute amounts at least sufficient to meet the requirements under foreign government regulations. The plans' assets are primarily invested in listed stocks, bonds and time deposits.

The components of pension expense for the significant non-U.S. defined benefit plans as follows:

For the Three Years ended December 31, 1995 (In millions of Dollars)	1995	1996	1997
Service cost	34.7	32.3	29.8
Interest cost on Projected benefit obligations	57.2	45.1	46.7
Expected rturn on plan assets	-82.1	-68.4	-67.1
Net amortization	-6.4	-6.9	-6.7
	3.4	2.1	2.7

The actual returns on plan assets were $139.6 million, ($31.7) million and $160.4 million for 1995, 1994 and 1993, respectively. These returns reflect the general securities market conditions experienced in the respective years and the impact of currency exchange rate fluctuations.

The funded status of the non-U.S. defined benefit plans and weighted average actuarial assumptions used to measure the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are as follows:

December 31, 1995 and 1994 (In millions of Dollars)	1995	1994
Actuarial present vale of 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Vested	614.4	542.4
Nonvested	6.4	6.3
	620.8	548.7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720.1	643.5
Fair value of plan assets	908.4	763.0
	188.3	119.5
Unrecognized net gain from past experience different from that assumed	-56.1	9.7
Unrecognized Prior service cost	-4.0	-4.4
Unrecognized SFAS No.87 transition amount	-28.7	-34.8
Accrued pension liability	99.5	90
Actuarial assumptions:		
Discount rate	8.40%	8.90%
Weighted average rate of compensation increase	6.30%	6.90%
Expected long-term rate of return on plan assets	9.80%	10.30%

In 1995, the discount rate used to value the liabilities of the U.S. defined benefit plans was decreased to reflect current worldwide interest rates. Assumptions, including projected compensation increases and potential cost of living adjustments for retirees, were also revised to reflect current expectations as to future levels of inflation. The increase in the 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and the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reflects, in part, the impact of the change in these assumptions and the impact of currency exchange rate fluctuations.

2) AIG[100)]

15. Employee Benefits

(a) Employees of AIG, its subsidiaries and certain affiliated companies, including employees in foreign countries, are generally covered under various funded and insured pension plans. Eligibility for participation in the various plans is based on either completion of a specified period of continuous service or date of hire, subject to age limitation. While benefits vary, they are usually based on the employees' years of credited service and average compensation in the three years preceding retirement.

AIG's U.S. retirement plan is a qualified, noncontributory, defined benefit plan. All qualified employees who have attained age 21 and completed six months of continuous service are eligible to participate in this plan. An employee with 5 or more years of service is entitled to pension benefits beginning at normal retirement at age 65. Benefits are based upon a percentage of average final compensaion multiplied by years of credited service. The average final compensation is subject to certain limitations. Annual funding requirements are determined based on the "projected unit credit" cost method which attributes a prorata portion of the total projected benefit payable at normal retirement to each year of credited service. · · ·

· · ·

100) AIG, Annual Report 1993, pp.89-92., Note 15.

Eligibility for participation in the various non-U.S. retirement plans is either based on completion of a specified period of continuous service or date of hire, subject to age limitation. While benefits vary, they are generally based on the employees' years of credired service and average compensation in the years preceding retirement.

Assumptions associated with the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and expected long-term rate of return on plan assets at December 31, 1993 were as follows:

	Range of Non-US Plans*	US Plans
Discount rate	6-15%	7%
Salary increase rate	3-13	5
Expected long-term rate of return on plan assets	7-15	9

* The range for the non-U.S. plans reflect the local socioeconomic environments in which AIG operates

The following table set forth funded status of the various pension plans and the amounts recognized in the accompanying consolidated balance sheet as of December 31, 1993.

Net pension cost for the years ended December 31, 1993, 1992 and 1991 included the following components:

(in thousands)

	1993		
	Non-U.S.	U.S.	Total
Plan assets as fair value*	131,391	139,129	270,520
Actuarial present value of benefit obligations:			
Accumulated benefits earned prior to valuation date:			
Vested	143,614	94,717	238,331
Nonvested	21,038	15,747	36,785
Additional benefits based on estimeted future se	48,973	66,652	115,625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213,625	177,116	390,741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in excess of plan ass	82,234	37,987	120,221
Unrecognized prior service cost	(9,486)	(2,786)	(12,272)
Unrecognized net gain (loss)	(6,344)	1,321	(5,023)
Unrecognized balance of the initial transition am	(23,266)	(13,692)	(36,958)
Net amounts to be applied to future periods	(39,096)	(15,157)	(54,253)
Adjustment to reflect minimum liability	23,268	1,896	25,164
Accrued pension liability	66,406	24,726	91,132

* Plan asset are invested primarily in fixed-income securities and listed stocks

(in thousands)

	1993	1992	1991
Cost of benefits earned during the period	131,391	139,129	270,520
Interest cost on			
projectected benefit obligation			
Actual return on all retirement plan assets	143,614	94,717	238,331
Net amotization and deferral of	21,038	15,747	36,785
actuarial gains and losses	48,973	66,652	115,625
Amortization of the initial transition amounts	213,625	177,116	390,741
Net pension expense*	82,234	37,987	120,221

* Net pension expense included $20,999, $13,478, and $13,433 related to non-U.S. plans for 1993, 1992,and 1991 respectively

(b) AIG sponsors a voluntary savings plan for domestic employees (a 401(k) plan), which provides for salary reduction contributions by employees and matching contributions by AIG of up to 2 percent of annual salary.

(c) In addition to AIG's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AIG and its subsidiaries provide a postretirement benefit program for medical care and life insurance, domestically and in certain foreign countries. Eligibility in the various plans is generally based upon completion of a specified period of eligible service and reaching a specified age. Benefits vary by geographic location.

[부록Ⅲ-5] SAP의 개정 연금회계기준: SSAP 8[101)]

NAIC의 신 감독회계기준의 제정을 책임지고 있는 "회계관행 및 절차 위원회(NAIC EX4 Task Force)"는 두 개의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다. SAP제정 작업반(working group)은 감독회계기준서(SSAP)의 제정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현안과제 작업반(EAIWG)은 SAP보다 세부적인 분류, 해석, 응용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다음은 SSAP No.8, "Pension"의 주요내용이다.

□ 범위

1.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제 운영에 따른 연금채무에 대한 감독규정상 회계기준이다.

□ 확정급부형 연금제

2. 확정급부형 연금제에서는 연금참여자의 퇴직 또는 연금중단시에 그들에게 제공되는 연금급부액을 확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금제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연금수급권이 없는 근로자들을 배제하는 수정을 가하여 SFAS 87, "기업연금회계"를 채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현행 연금제에 가입하여 수급권을 획득하기 이전에 제공된 근로에 대한 원가는 근로자가 수급권을 획득하게 되

---

101) NAIC(http://www.naic.org), "SSAP 8" 및 "NAIC Policy Statement on Maintenance of 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 drafted 9/24/97." 참고로, 보험사에 대하여 GAAP과 SAP의 이원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에서 감독회계기준인 SAP을 적용할 경우의 적용우선순위는 NAIC의 Accounting Pratices and Procesures Manuals가 최우선이고, 다음으로 GAAP의 적용순위(level 1,2,3)를 따르며, 이들 기준에도 없는 사항은 NAIC의 각종 지침, 모델법 등을 적용하며, 여기에도 없을 경우에는 GAAP의 마지막(level4) 적용단계인 국제회계기준(IAS), 회계문헌 등을 적용한다. 여기서 GAAP의 적용우선순위 중 level 1에 해당하는 기준들이 ARB, APB Opinion, SFAS 등이다. E. A. Mulligan & G. Stone(1997). 본문의 각주26. 참조.

는 기간의 순기간원가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 기준의 조항을 채택함에 따른 무형자산 또는 선급비용은 비인정자산(non-admitted asset)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자산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충족하기 위한 현금으로 즉시 전환될 수 없는 것이다.

3. 보험회사가 확정급부형 연금제를 청산 또는 감액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다음에서 언급될 과거의 모든 미인식 금액을 즉시 인식하여야 한다.
4. 청산이란 취소가 불가능한 거래로서 연금제의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위험을 제거함으로써(예를 들어, 연금수급권 획득자에 대한 급부에 충당하기 위한 무배당부 연금상품을 구입하거나 특정 연금급부를 받을 수 있는 연금참여자들의 권리에 대한 대가로 현금으로 일괄 지급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연금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만일 청산이 일어나고 그 순 결과가 손실로 나타날 때, 그 손실은 청산시에 인식한다. 만일 청산시 이득이 발생하면, 그 이득은 회사가 받을 때까지는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 그 이득을 인식할 때에는 그에 따른 특별세(excise tax) 부과도 인식하여야 한다.
5. 감액이란 연금제의 구성(the make-ups)을 크게 바꾸어(예를 들어, 대상 근로자의 축소 등) 버리는 사건이다. 감액이 일어날 때, 손익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구성요소가 있다. 미인식된 과거근무원가는 손실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감액에 따른 연금급부채무의 증감 또한 손익을 초래하고, 과거근무원가의 손실과 합하여진다. 감액의 순 결과가 손실로 나타나면, 그러한 손실은 감액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probable), 그러한 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할(reasonably estimated) 수 있을 때 손실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득을 인식할 때에는 그에 따른 특별세 부과도 인식하여야 한다.

□ 확정갹출형 연금제

6. 확정갹출형 연금제는 연금제에 대한 기업의 확정갹출액과 연금참여자에 대한 배분을 확정하고 있다. 연금참여자의 퇴직 또는 연금중단시에 그들에게 제공되는 연금급부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갹출액, 연금자산의 투자수익액과 일부 연금제에서 근로자가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기 전에 탈퇴함에 따라 가져가는 환급액(forfeitures) 등에 좌우된다.
7. 확정갹출형(DC) 연금제에 있어서 보험회사는 근로자들이 연금수급권을 획득하는 기간에 걸쳐서 연금기금에서 요구하는 갹출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연금수급권 획득 이전에 이루어진 연금참여자 계정에 대한 갹출액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비인정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연금참여자가 중도 탈퇴하거나 퇴직한 이후에 필요한 갹출액이 발생하면, 연금갹출액에 대하여 참여자가 최초로 수급권을 획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근속기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기록한다.
8. 일부 확정갹출형 연금제에서는 기업의 갹출액을 연금참여자들간에 할당할 일정금액이 아니라 개별 연금참여자들의 급여의 일정률(%)로 확정하기도 한다. 기업의 갹출액이 연금기금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개별 연금참여자들에게 할당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선급비용으로 기록되며, 감독규정상 회계기준에서는 비인정자산으로 본다.

□ 공시

9. SFAS 87, 54절(para. 54)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시사항은 단지 연금수급권을 가진 근로자들을 포함하려는 본 기준에서의 수정을 감안하여 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10. 확정급부형 연금제의 청산 또는 감액와 관련된 또는 중단급부를

제공할 때의 손익을 기업이 인식할 때에는 SFAS 88, 17절(para. 17)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시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1. 공시요구조건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에 대하여는 서문을 참조.

□ 기업결합 또는 지주회사 연금제

12. 여러 보험회사들의 근로자들이 보험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의 연금가입자들일 경우이다. 이러한 연금제에 가입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연금제에서의 채무를 지지 아니하는 보험회사는 해당 기간동안 연금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 갹출액 중 지주회사 또는 모회사로부터 할당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연금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당기 납입하여야 할 갹출액과 미지급액은 채무로 인식하여야 한다.

13. 보험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지주회사가 가입하고 있는 연금에 참여하고 있다면, 법적 채무는 없더라도 재무제표상에 공시하여야 한다. 발생연금비용과 연금기금이 사용하는 배분방식 또한 공시되어야 한다. 보험회사가 연금기금에 대하여 직접적인 채무가 있다면, 이 기준의 2절에서 11절(para. 11), 14절에서 20절까지(pars. 14 20)가 적용될 것이다.

□ 관련 문헌

14. SFAS 87에서 채택하고 있는 2절에서 11절(para. 11)과 15절에서 20절(pars. 15 20), 그리고 SFAS 88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a. 연금채무의 측정에서 연금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부분적으로 연금수급권을 지닌 근로자는 그 수급권 획득정도까지만 포함한다.

b. 연금자산의 공정가액이 연금부채를 초과하는데 따르는 자산은 비인정자산으로 본다.

c. 이 회계기준의 채택일에는 연금수급권을 가진 근로자와 관련하여 과거에 인식되지 않은 연금채무 또는 자산은 즉시 인식하거나 미래기간에 걸쳐서 상각되어야 한다.

d. 연금제의 청산이나 감액에 따른 (특별세[102])를 차감한)순이득은 회사가 그 금액을 받기 전에는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

15. 이 기준에서는 또한 FASB의 EITF 88-1, "확정급부형 연금제의 기발생(확정)급부채무(VBO)의 결정," EITF 90-3,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의 미래 갹출액에 대한 기업의 채무 회계처리," EITF 91-7, "보험회사가 연금급부를 제공하지 못한 이후에 기업이 지급한 연금급부에 대한 회계처리," 그리고 EITF 96-5, "계약상 중단급부 또는 기업합병을 예상하여 연금제의 가정을 변경함에 따른 채무의 인식"기준들을 채택하고 있다.

□ 시행일 및 이행

16. 이 기준은 2001년1월1일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한다.

17. 2001년1월1일부로 이행채무 또는 이행자산은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와 연금자산(PA)의 공정가액의 차이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법령 시행일 이전에 회사가 SFAS 87을 감독규정 회계처리를 위하여 채택했다면 이행채무 또는 이행자산은 앞에서 계산한 금액과 SFAS 87하에서 계산한 것을 비교하여야 한다. 반대로 법령 시행일 이전에 SFAS 87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이행자산이나 이행채무는 추가적인 자산 또는 채무가 되는 것이다.

18. 2001년1월1일부로 회사가 추가적인 채무를 계산한다면, 이 채무

---

102) 연금중단·청산에 따른 순이득에는 20% 50%의 특별세(excise tax)가 부과된다. Kieso & Weygandt(1998), p.1124.

는 다음의 두 가지중 한 가지로 인식되어야 한다.

a. 회사는 전체 추가채무를 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다.

b. 또 다른 방법으로서 회사는 추가채무를 연금의 순기간원가의 한 구성항목으로서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서 상각할 수도 있다.

19. 2001년1월1일부로 회사가 추가자산을 계산하는 경우, 이 자산은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로 인식할 수 있다.

a. 회사는 전체 추가자산을 잉여금에 합산할 수 있다.

b. 또는 다른 대안으로서 회사는 매 기간마다 연금의 순기간원가의 구성항목으로서 추가자산의 일정금을 발생시켜 전체 순기간원가가 '0'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차감할 수 있다(즉, 추가자산의 발생이 당기의 순기간원가에서 차감되는 것이다).

20. SFAS 87을 적용하여 과거에 인식된 금액보다 작은 이행채무로 인하여 나타난 추가자산은 무엇보다 먼저 채무를 차감하는데 쓰여야 한다. 추가자산이 남아 있으면 비인정자산으로 간주한다.

[부록Ⅲ-6] 퇴직연금관련 국제회계기준: IAS 19

Ⅰ. 보도자료 전문[103]

오늘 공표된 국제회계기준을 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가 연금 등의 퇴직급부에 대한 회계요건들을 변경하였으며, 처음으로 기타 근로자 급부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AS 19, "근로자 급부"에 대하여 장 클라센 IASC 위원장은 "근로자급부, 특히 연금급부의 기금적립이 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연금급부가 기업의 원가요소로서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노동원가가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기준으로 기업은 근로자급부를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 새 기준의 주요특징

1. 근로자 급부에 대한 정보는 공시되어야 한다. 특히, 신 기준은 크게 개선된 공시사항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에 인식되는 금액의 분석, 대차대조표 금액의 조정과 주요 계산기초들의 기술들을 포함한 확정급부형 연금제와 기타 퇴직후 근로자급부 -을 요구하고 있다.
2. 또한 신 기준에서 근로자 주식옵션과 같은 지분보상급부에 대하여도 특별한 회계처리를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는 요구되고 있다.
3. 연금 및 기타 퇴직후 근로자급부의 채무와 원가에는 시장가치를

103) http://www.iasc.org.uk., **보도자료**, "IASC Publishe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on Employee Benefits", March 5, 1998.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할인율은 대차대조표일의 시장수익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모든 연금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의 할인이 아닌 공정가액으로 측정된다.

4. 할인율은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채권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곳은 국채·지방채)의 수익률로 하여야 하며, 그 채권의 기간과 통화표시는 퇴직후 근로자급부의 기간 및 통화표시와 일치하여야 한다.
5. 급부채무와 이와 관련된 모든 연금자산 모두에 대한 미인식된 누적손익이 (총)채무의 10%나 연금자산의 공정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점진적으로 인식(상각)되어야 한다. 이러한 10%라는 범위 밖의 초과액은 연금참가 근로자들의 향후 예상되는 평균 잔여근무기간에 걸쳐서 상각되어야 한다.
   - 또한 위의 상각방법보다 빠른 체계적 인식기준도 허용된다. 단, 손실과 이익에 대하여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그 기준은 매기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IASC에서는 모든 손익을 즉각 인식하는 일관된 회계정책이 위축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 과거근무원가는 그 수정된 급부가 획득될 때까지 평균기간에 걸쳐서 균등방식으로 상각되어야 한다(그러므로 급부가 이미 획득된 정도까지는 즉각적으로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6. 미래급부방식 - IAS 19, "퇴직급부원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체방식은 발생연금급부방식의 하나인 예상 단위급부획득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의 채택으로 삭제되었다.
7. 기업은 확정급부채무의 현재가치와 연금자산의 공정가액을 정기적으로 결정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이 대차대조표일에 결정되어야 할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측정빈도가 적어지거나(예를 들어, 영국에서 흔히 쓰여지고 있는 3

년마다 1회실시), 측정이 너무 이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대차대조표일 이전 3개월이내).

8. 기업은 급부가 확정된 개별관리 복수기업 연금제에 대해서는 확정급부형 연금회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확정급부형 연금회계를 사용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고 확정갹출형 연금회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9. 기업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끝내거나 잉여인력의 자발적 퇴직을 유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단급부의 제공에 필요한 채무가 발생할 때 연금중단급부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0. 이 기준을 처음 채택하면서 기업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퇴직후 근로자급부에 대한 채무의 증가를 인식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채무가 줄어든다면 기업은 그 감소를 즉각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11. 이 기준은 1999.1.1이후부터 시작되는 회계기간에 대하여 적용된다. 물론 이를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은 1993년에 승인된 IAS 19, "퇴직급부원가"를 대체한다.

IASC의 사무총장 브라이언 칼스버그 경은 이 기준의 중요성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는 모든 세계시장에서의 역외자본거래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을 인준할 것을 고려하기 전에 IASC가 퇴직후 급부(post-retirement benefits, post-employment benefits), 유급휴가, 상여금제도, 후불임금에 대하여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 기준은 이 모든 현안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 기준을 공표하는 것은 이 기준이 IOSCO의 인준을 받기 위한 것이다."

Ⅱ. Summary of IAS 19(Revised), "Employment Benefits"[104]

□ 확정갹출형 연금제(DC)

1. 한 기간의 갹출액은 비용으로 인식한다.

□ 확정급부형 연금제(DB)

2. 당기근무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3. 모든 기업은 예상 단위급부획득방식(발생급부방식)을 연금비용 및 연금채무 측정에 사용한다.
4. 미래급부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5. 할인율은 연금채무와 유사한 만기를 가진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 이자율로 한다.
6. 연금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7. 대차대조표상 연금의 순자산은 가용한 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의 현재가치와 연금의 잉여금 발생에 따른 향후 가능한 갹출금의 감액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8. 만일 누적된 미인식 순손익이 연금채무의 현재가치의 10%나 연금자산의 공정가액의 10%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연금에 참가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예상되는 평균 잔여근로기간을 넘지 않는 기간에 걸쳐서 상각되어야 한다. 모든 계리적 손익을 즉각적으로 소득으로 인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의 방식보다 빠르게 상각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유지할 경우 인정한다.
9. 과거근무원가는 수정된 급부가 확정될 때까지는 평균기간에 걸쳐서 인식되어야 한다.
10. 중단, 감액 또는 청산은 그 발생시에 효과를 인식한다.

---

104) 이 기준은 1999.1.1이후 시작되는 회계기간에 적용. http://www.iasc.org.uk, 'standards.'

Ⅳ. 연금기금회계[105]

1. 연금기금에 대한 회계기준: SFAS 35[106]

가. SFAS 35의 제정과 재무제표 포함정보의 명시

ERISA가 회계인에 대하여 법률상 의무를 부과할 당시에는 연금기금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FASB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연금기금에 대한 일단의 회계기준들을 개발하기 위해 제Ⅱ장에서 언급한 프로젝트를 통해 1980년 3월에 SFAS 35, "확정급부형 연금기금(DB)의 회계·보고기준"을 공표하고, 1980년 12월 15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확정급부형 연금기금이 외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을 받으려면 SFAS 35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SFAS 35에 일치하는 정보는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양식 5500'의 명세서 B의 관련항목에도 사용된다.

SFAS 35에서는 연금기금의 재무제표에 특정 정보[107]를 포함하도록

---

105) 이 장의 내용은 Don McGill, et al.(1996), pp.621-625의 "Accounting for the plan"의 분석내용을 기반으로 하였다.

106) SFAS 35는 현존 확정급부형연금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제외한 ERISA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연금 및 세법상의 비적격연금들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SFAS 59와 SFAS 75로 인하여 주정부 및 지방정부 단위의 연금에 대해서는 SFAS 35의 시행일이 연기되었는데, 이는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가 이들 연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리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SFAS 35는 청산될 연금기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확정갹출형 연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Don McGill, et al.(1996), p.623, 각주8. 참조. 한편 SFAS 35 이후에 공표된 SFAS 87, "기업연금회계"에서도 연금기금의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SFAS 35를 따름을 정하고 있다. SFAS 87, para.8.

107) 여기에는 연금기금의 회계년도말 현재 순자산, 순자산의 변동, 누적급부의 현재가치, 연금제의 수정, 연금기금간 합병·분사(plan merger or spin-off)와 같은 요소들과 누적급부의 현재가치 산출에 있어서의 계산기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회계기간의 기초 또는 기말 현재 연금급부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며, 회계기간 개시일이 정해지면 재무제표에는 그 날의 순자산가치(추가적으로 기말 현재의 순자산)와 2개 회계연도간의 순자산의 변동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연금기금은 자산을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산에는 갹출액이 공식적인 이행계약서나 법적·계약상 요건에 따라 납입되어야 할 것이라면 보고일 현재의 미수갹출액(contributions receivable)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자산은 공정가액(fair value)으로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 공정가액이란 기본적으로 ERISA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행 가치(current value, 즉 시장가치)와 같은 의미이다. 일부 또는 모든 참가자에게 연금급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구입한 연금보험상품에 대하여는 그 가치를 연금기금의 자산과 부채 모두에서 제외한다. 연금관리를 위한 연금기금 소유의 건물, 비품 등의 운영자산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원가로 기록한다.

나. 누적급부기준 및 공시사항

SFAS 35를 공표하면서 FASB는 발생연금급부를 해당 연금기금의 급부산출공식과는 무관하게 하나의 통일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즉, 누적연금급부 기준으로 급부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미래급여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누적급부는 연금이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가치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급부를 지급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기금의 감소 상황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그 가치는 현실적인 이자율 가정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되어 나타난다. SFAS 35에 의하면, 투자수익의 예정율은 연금지급이 이연(deferred; 후불)되는 기간동안의 예상수익율을 반영하여야

초의 변화가 포함된다.

하고, 그 수익은 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유형에 따라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한 수익 및 연금기금의 투자정책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적립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미래급여반영급부의 이연기간 보다 이미 발생한 급부(benefits already accrued)의 평균 이연기간이 짧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먼저 반영하기 위하여 기금적립의 목적보다는 SFAS 35의 목적에 맞는 보다 높은 이자율 가정을 사용하는 연금기금들이 많다[108].

SFAS 35에서는 누적급부의 현재가치를 지급상태별 급부(benefits in payment status), 기타 연금수급권 획득자의 급부(other vested benefits)와 연금수급권 미획득자(nonvested benefits)의 급부 3가지 범주로 나누어 각각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 근로자들에 대한 누적 갹출액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확정급부형 연금의 제양식에 누적급부의 현재가치를 결정하는데 쓰이는 중요한 계리적 방식과 계산기초에 대한 설명 뿐만 아니라 중요한 변화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연금의 합의사항에 대한 일반적 기술 뿐만 아니라 기금적립정책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시하여야 할 기타 항목들도 열거하고 있다. SFAS 35에서의 금액들은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산출된 가치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이는 상이한 자산평가규칙들에 연유한 것으로서 특히 양식 5500의 대차대조표나 명세서 B의 기금적립에 쓰이는 가치와는 상당히 다르다.

2. ERISA에 따른 연금기금의 연차보고서 제출

108) 뉴욕주 보험법에서 단체연금의 책임준비금 적립이율의 상한을 정해 놓고 있는 것(뉴욕주보험법 제4217조, 제4606조; 1979년 이후 계약이 체결된 단체연금의 경우 5%)도 위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장의 제4절 참조.

ERISA와 내국세법(IRC)에서는 기업 또는 연금기금이 연금제에 관한 서류를 노동부(DOL), 연금급부보장공사(PBGC), 국세청(IRS)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3개 감독기관들은 공통의 연차보고서 양식을 개발하였는데 그것이 '양식 5500'이다. 양식 5500이 IRS에 제출되면 IRS는 그 사본을 DOL에, 내용중 특정 추출자료를 PBGC에 제공한다[109]. 약식인 5500-C는 연금가입자가 100인 미만인 연금기금[110]을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이들 소규모 연금들은 더 단순화된 양식 5500-R로 3년에 2회만 제출할 수도 있다. 양식 5500과 5500-C에는 자산·부채표와 연금기금변동표 및 추가적인 특정 재무정보를 덧붙이도록 되어 있다.

양식 5500과 5500-C에는 연금기금의 회계기간 기초 및 기말의 자산과 부채가 나타난다. 연금자산은 일반적으로 현행 가치(current value)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111] 대다수 투자자산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한편 연금급부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구입한 연금보험상품[112] 등의 가치는 위 양식들의 자산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양

---

109) ERISA §103(100인 이상 연금기금의 연차보고서 보고), §4043, IRC§6058(보고사항: reportable events). 연금에 대한 법령상 세제우대도 이들 3개 기관에서 정한 규정을 기업이 준수하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EBRI(http://www.ebri.org/fundamentals/), Don McGill, et al.(1996), p.52, pp.621-622, pp.746-747.

110) ERISA §104(a)(2)(A)

111) ERISA의 현행 가치는 '연금기금에 대한 회계기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FAS 35에서 공정가액으로 표현하고 있다.

112) 관련된 개념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급부할당(allocated benefits)과 급부할당을 위한 기금적립상품(allocated funding instruments)이다. "급부할당"이란 연금기금이 보험사에게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각 연금참여자, 즉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급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상품(insurance or annuity contracts)을 구입함을 말한다. 이로써 근로자는 기업의 파산과 관계없이 퇴직시 연금지급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가 거수보험료에 상응하는 법률상 모든 급부채무를 지게되는 것이다. 이 때의 보험상품을 "급부할당 기금적립상품"이라 한다. 이는 제Ⅰ장의 연금기금과 보험회사의 관계 설명, 제Ⅲ장의 '연금자산의 측정'에서 설명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대비되는

[표5] 양식 5500의 부속명세서[1]

명세	주 요 내 용	비 고
A	○ 보험정보; 연금의 기금적립에 이용되는 연금보험 상품 등에 관한 재무정보	
B	○ ERISA의 적립기준에 따라 확정급부형(DB) 연금에 대하여 소속 계리인이 작성, 서명한 명세서 ○ 계리정보; - ERISA의 최소적립요건 준수 정보 - 회계기간 기초에 누적연금급부의 현재가치[2]	- 계산기초 최선추정치 반영
SSA	○ 연금수급권 취득권자의 중도 퇴사시 사용 ○ 명세서의 사본은 사회보장관리국(SSA)에 제출	
기타	1. 모든 투자명세서 2. 이해관계자 투자명세서 3. 부실 채권·리스 명세서 4. 연금자산 현행 가치의 3%를 초과하는 모든 거래의 명세서 5. 독립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1, 4, 5는 5500-C에서는 없음

주) 1. 확정급부형이나 확정갹출형 연금기금에 위 요건들 모두 적용(명세서 B 제외).
2. 100인 미만의 연금가입자를 가진 연금기금의 경우는 누적급부액 생략 가능.

식에 나타난 자산에는 일반적으로 현 근로자들에 대한 급부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금계약에서 개별적으로 할당된 금액 뿐만 아니라 퇴직근로자들을 위하여 구입한 연금증권들의 가액은 제외한다. 양식 5500에 기재되는 부채에는 지급 기일이 도래하였거나 미지급된 연금급부를 포함하여 지급할 금액을 표시하지만 미래에 지급하게 될 급부에 대한 연금채무는 제외한다. 이렇게 표시된 채무를 총자산에

개념이 미할당 적립상품(unallocated funding instruments)이다. Harvey W. Rubin(1995), [부록Ⅴ] 참조.

서 차감하여 향후 연금급부 및 비용에 충당할 순자산을 산출한다. 양식 5500과 5500-C에는 기초와 기말의 순자산 조정표가 있다. 여기에는 소득, 비용 및 자산의 미실현 평가손익을 포함한 순자산의 변동이 나타나 있다. 양식 5500은 [표5]에 있는 부속명세서들을 요구하고 있다.

ERISA에서는 최소 100인 이상의 연금가입자를 가진 거의 모든 연금기금에게 매년 독립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요구하고 있으며,[113]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들이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GAAP)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감사의견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Generally Accepted Auditing Standards: GAAS)에 의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사에 의하여 [표5]의 재무정보에 대한 공인회계사 의견서의 기초가 제공되는 것이다.

3. 연금기금과 연금계리인의 역할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연금채무의 (계리적) 현재가치"처럼 상당한 부분들이 "계리적(actuarial)"이란 용어를 많이 보아 왔다. 이렇듯 연금제도는 수리적이고 복잡한 각종 위험율들을 감안하고 있어 해당 연금제도가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것인가를 확인해 줄 계리인, 정확히 말하자면 연금계리인(pension actuary)이 있어야 한다[114].

계리인의 주 목적은 기업이 자신의 연금채무에 상응하는 적절한

113) 전적으로 연금보험상품 등의 구입으로 기금을 적립한 연금기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가치는 연금자산과 부채 모두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당연한 결과이다.

114) 미국의 연금계리인에 대한 사항은 http://www.aspa.org. 참조.

기금적립방식을 수립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며, 확인에 따르는 계산에는 일련의 계산기초들을 설정하고 그 계산기초들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사망률, 이직률, 이자율 및 수익률, 미래의 급여, 기타 연금운영에 필요한 제비용 등 연금기금의 적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변수들을 예측하는 것이 바로 계리인들이다. 계리인들은 해당 연금기금이 미래의 연금급부를 지급할 가능성을 계산하고, 그 재무적 평가를 행하는 전문인들이다[115]. 확정급부형(DB) 연금에서 계리인이 제공하는 정보와 측정치들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어서 계리인들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116]. 대표적인 퇴직연금 수탁기관인 보험회사들[117]은 계리인(appointed actuary)들로 하여금 위험을 평가하고, 갹출액, 즉 보험료를 설정하는 것은 물론 기타 약관(증권)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연금의 개발, 시행 및 기금적립에 있어서 계리인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통적인 보험회사 소속이 아니라 연금기금 등에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는 컨설턴트로서 활약하는 계리인들도 있다.

---

115) 영국의 경우, 연금계리인은 최소한 3년6개월마다 확정급부형 연금제(DB)에 대하여 향후 지급능력 및 지급능력 제고대책 등 연금기금의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표준지급능력준비서(Standard Solvency Certificate or Simply Certificate A)'라는 보고서를 작성, 서명하여 감독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내용은 보험계리인회의 연감에 등록되어 연금참여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된다. 성주호 · 김진억(1998), p.62, p.67 주35.

116) 퇴직연금에서의 연금계리인의 역할과 그 밖의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주호 · 김진억(1998), pp.60-66. 참조.

117) 역사적으로 우호조합(friendly societies)에서 시작하여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연금수리에 입각한 연금수탁업무가 보편화되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생명표의 작성이 생명보험사의 고유업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 투자신탁사 등 비보험권 금융기관들은 자신의 고유 생명표가 없기 때문에 확정갹출형 연금제(DC)를 운영함이 일반적이지만, 일본의 경우 국민생명표의 85%를 퇴직연금 생명표로 사용하고 있어 상품설계상의 차이는 없다. 성주호 · 김진억(1998), pp.61-62.

4. 연금기금에 대한 감독과 회계기준[118]

가. 두 가지 관점에서의 기금적립

연금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의 적립방식이다. 연금기금의 계속성에 초점을 맞추느냐, 기금의 청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느냐에 따라 기금적립에 대한 시각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청산 관점(winding-up approach)에서 보면 불충분한 기금의 적립도 계속성 관점(on-going approach)에서 보면 충분한 기금적립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보험에 대한 감독의 초점은 청산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연금기금에 대한 감독당국들의 감독방식도 청산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119].

계속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연금기금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체제이다. 따라서 기존의 근무(past services) 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루어 질 미래의 근무(future services)도 중요시 한다. 기업연금회계에서 보았던 미래급부방식은 이러한 시각에 근거한 것이다. 반면에 청산 관점에서 보면, 연금기금은 최종급여의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근무를 강조한다. 연금기금의 지급능력측정과 기금적립의 최저기준설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근로자의 연금기금간 이동과 이전가능성(portability and transferbility)에 관한 수급권과 감독수단들의 강화도 청산관점에 그 근거를 두고 있

---

118) 이 절의 내용은 미국을 비롯한 OECD의 회원국들의 연금제도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연금회계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일부 사항들만을 살펴 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OECD(1998), pp.67-134. 참조.

119) 최근 연금기금에 대한 감독 추세는 규제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기존의 감독규정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독규정들을 건전성 규제라는 동일한 감독목적을 지니고 있는 보험관련 감독규정에 맞추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OECD(1998), p.72.

다[120].

청산 관점의 접근방식은 확정급부형 연금제의 누적급부채무(ABO) 개념에서 볼 수 있다. 최저적립기준들(minimum funding requirements)은 이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121]. 미국은 1980년대 기존의 계속성 관점(entry-age cost method; EAM[122])에서 청산 관점의 예상 단위급부획득방식(projected-unit credit method; PUCM)으로 회계기준을 전환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다시 기금적립규정에도 변화를 가져와 1987년 총괄예산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7; OBRA)에서는 PBO기준 100% 적립액과 ABO기준 150% 적립액 중 작은 금액의 적립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ABO로 전환하게 되었다[123].

나. 연금회계기준과 기금적립규정[124]

---

120) 이러한 이유로 청산관점의 접근방식을 법률적 접근방식, 또는 소급적 접근방식이라고도 한다. OECD(1998), p.74-75.

121)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 최저급부보장의 보장급부채무(Guarantee Benefit Obligation; GBO), 물가연동 급부채무(Indexed Benefit Obligation; IBO) 등도 누적급부채무와 산정방식을 달리 할 뿐 기본적으로는 누적급부채무에 대응되는 발생급부방식의 개념들이다.

122) 가입연령방식(EAM)은 근로자의 미래급여상승과 미래급부발생을 동시에 고려하는 미래급부방식의 하나이다. 성주호 · 김진억(1998), p.159, pp.175-176. 참조.

123) 실제로 이러한 적립기준의 하향은 많은 연금기금들이 초과 적립상태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 확정급부형 연금제에 가입한 기업들에게는 갹출금 지급이 감소되거나 당분간은 내지 않아도 되는 소위 "contribution holiday"를 가져 왔다. 한편으로 연금기금의 초과적립은 관련 당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기금의 지급능력을 중시하는 연금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이를 선호하지만, 과세대상소득의 감소로 받아들이는 세제당국의 이해와는 대립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는 ABO의 150%를 최저적립의 기준으로 삼았고, 영국에서는 PBO 또는 IBO(indexed benefit organization)의 5%가 기금적립의 최저 한도로 정해졌다. OECD(1998), p.76, p.84.

124) 여기서는 연금회계기준들인 미국의 SFAS 87, 영국의 SSAP 24, 국제회계기준인 IAS 19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 있다. 주의할 것은 영국의

미국의 SFAS 87과 영국의 SSAP 24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연금에 대한 회계기준들이다. 두 회계기준은 모두 기업의 갹출금의 가능한 변동을 주석이 아닌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내도록 하고 있지만, SSAP 24가 계속성 관점에 근거하여 계리방식(actuarial methods)의 사용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SFAS 87은 예상 단위급부획득방식(PUCM)만을 쓰도록 하고 있다. 기금의 잉여금[125]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126]. 평가에 관련해서도 SFAS 87은 시장가치(공정가액)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전의 IAS 19는 발생급부방식과 미래급부방식 모두의 사용을 허용하였지만, IASC는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발생급부방식이 보다 유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같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된 IAS 19도 청산 관점에서 평가방식을 수정하였다. 현재의 추세는 회계기준이나 최저 적립기준 모두 청산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SSAP는 미국의 보험감독회계기준(SSAP)에 대응되는 기준이 아니라 U.K. GAAP이라고 할 수 있는 Statements of Standard Accounting Pratice를 말한다.

125) 확정갹출형에서 기금의 초과적립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잉여자산의 문제는 확정급부형 연금제(DC)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다. 연금부채를 초과하는 연금자산, 즉 잉여금(surplus assets)은 제Ⅱ장에서 언급한 대로 기업의 몫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대신 기금적립의 부족분 역시 기업이 책임진다는 것도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나 임금후불의 입장에서 생명보험의 이윤배분과 유사하게 근로자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에 있어서도 초과적립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으면, 합의사항에 근거하여 잉여금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잉여금은 기업의 갹출금 규모나 지급을 면제하거나 근로자들의 급부수준을 상향하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기금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준비금으로 비축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OECD(1998), p.81.

126) 잉여금에 대해서는 세제상, 기금의 오용·유용방지 목적으로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 기업이 연금기금으로부터 초과적립된 잉여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자들의 급부를 상향시키는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기업 환수액에 대하여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OECD(1998), p.81.

한편 적립규정에 있어서 이자율과 상각(amortization)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연금제가 시작된 초기 미적립 채무를 25년 이내 상각을, 그 이후의 연금제의 수정 또는 새로운 연금제의 추가 등으로 나타난 미적립 채무에 대해서는 15년내 상각을, 투자수익의 저조로 나타난 미적립 채무에 대해서는 5년내 상각을 적용하고 있다[127]. 반면에 미국의 경우 과거에는 미적립채무를 10년 30년 또는 40년에 걸쳐서 상각할 수 있었으나, SFAS 87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 연금참여자의 미래 근무기간에 걸쳐서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128].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제Ⅲ장에서 언급했듯이 채택된 할인율 정도에 따라 연금채무의 규모가 큰 폭으로 달라진다[129]. 역사적으로 보아도 미국의 많은 과소 적립상태의 연금기금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연금채무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높은 이자율 가정을 채택해 온 것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이에 대응하여 이자율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네델란드에서는 4%, 일본은 5%, 벨기에는 7%, 스페인은 6%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과 같은 경우는 사전적으로 이자율 상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연금채무에 충당할 자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OECD 회원국들마다 상당히 다르며, 규제와도 상충되는 면이 있다. 시장가치를 적용하는 것은 실현 손익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EC의 제4 회계지침[130]의 기본원칙과 상반되며, 보험회사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

127) OECD(1998), pp.86-87.

128) W.M. Mercer(1988), p.5.

129) 제Ⅲ장 제2절의 각주51. 참조.

130) 제4지침은 1978년 제정되어 영국과 덴마크는 1981년 회사법 제정으로 이를 처음 적용한 이래, 1983년에 네델란드, 1991년 이후부터는 모든 회원국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 지침은 (1)각국의 회사법을 조정함으로써 공동체내 경제활동에 불필요한 행정·법령상 장애를 제거하고, (2) 기본적이면서도 수용가능한 재무제표 양식의 제정과 공동체내 회계정보의 최소한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최소한의 감사·공시 및 회

EC의 회계지침은 자산평가를 원가법과 시가법 모두에 근거하여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 두 가지 방법 중 채택되지 않은 방식에 의한 결과를 대차대조표에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회계기준을 제외하고는 연금자산에 대한 평가규정들도 대체적으로 이와 유사한 규정들을 채택하고 있다[131].

다. 연금기금의 증가와 효율적인 감독 필요성의 증대

연금기금은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제당국이다. 연금기금은 세제당국이 정한 일정한 요건(세제적격)을 갖추면 상당한 세제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다음으로는 규제·감독당국이다. 규제·감독당국은 금융시장, 특히 여러 나라의 경우 보험부문을 맡고 있는 기관들이다. 연금기금이 금융시장에서 주요 기관투자가라는 점과 연금기금의 조직과 운영이 보험회사와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3층보장 중 제3보장에 해당하는(pillar 3) 개인연금 외에도 제2 보장인 연금기금(pillar 2)의 약 20 30%의 자산을 단체보험판매나 투자·급부관리자로서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금융시장, 특히 보험부문을 맡고 있는 규제·감독당국이 연금기금에 통제를 가하고 있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연금기금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규제·감독당국의

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은행, 보험을 제외한 모든 공·사유한기업에 적용된다. Haskins et al.(1996), p.70.

131) 연금자산의 또 다른 가치 추정방식들에는 자산의 향후 수익을 계리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장기소득을 평준화하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투자소득의 변동도 고려한다. 이 방식으로 인하여 영국의 연금기금들은 다른 나라들의 기금들 보다 상대적으로 주식투자가 많았다. 그러나 1995년 연금법(Pension Act of 1995)으로 시가평가에 근거한 최저적립기준이 도입되면서 급부의 물가연동요건과 함께 영국 연금기금들의 투자포트폴리오에 변화를 가져왔다. OECD(1998), p.88.

충분하면서도 효과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132]. 이에 따라 현장감사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감독기관의 감시는 주로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점검(review of accounting and financial statements)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요율산출기관(rating agency)이 제공하는 정보 이용과 연금기금의 참가자인 기업·근로자들에 의한 자율규제(self-regulation)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연금기금과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독은 법적 요건·의무의 준수 여부, 재무보고서 점검 등 재무통제, 책임준비금 및 갹출율의 계리적 점검, 통계 및 시장상황 등 경제상황 고려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감독기관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연금기금 이전의 각 기업의 연금제도이다. 기업의 연금제는 연금기금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기금에 대한 감독이 계리적이고 재무적인(actuarial & financial) 부문에 집중되는 반면, 연금제에 대한 통제는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계약 조항들, 즉 세제 등의 재정적·법적(legal & fiscal)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연금기금의 증가에 대응하여 기금의 사후감독(*ex post* controls) 경향을 가져 왔고, 보험상품에 대한 감독방향의 최근 추세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금기금에 대한 감독은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133].

---

132) 미국 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연금기금이 제출하는 모든 자료의 단지 1%만을 검증할 뿐이라고 한다. OECD(1998), p.90. 미국 연금기금에 대한 통계자료는 [부록Ⅳ-4]의 Ⅰ. '미국 연금기금의 각종 통계' 참조.

133) 최근 유럽평의회(European Commission)는 1997년의 녹서(Green Paper of 1997)에서 연금기금과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현재 단체생명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규정들을 연금에 적용, (2) 현재 연금의 틀에 단체생명보험에 대한 지급여력규정을 수정 적용, (3) 제2 보장(pillar 2)인 연금과 단체생명보험에 대한 새로운 EU 공통기준 마련, (4) 현 상태의 차이점을 존속시킴(사실상 이 차이점이 경쟁에 있어서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OECD(1998), p.94.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연금기금과 보험회사는 분명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 차이점들을 보면, 첫째, 보험회사는 재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연금기금은 이 서비스를 구입하는 기관이다. 둘째, 연금기금은 주주가 없지만 보험회사는 주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둘 모두 많은 변수를 가진 장기적 계리방식을 사용하지만 보험회사의 경우 단기상품의 판매 비중이 커지고 있다. 넷째, 연금기금이 보장하는 급부가 최종급여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에 보험회사의 상품은 명목기준이 통상적이다. 다섯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만 연금기금의 경우에는 기업과 근로자간에 이루어진다. 여섯째, 연금기금은 비영리기관이지만,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영리기관이라는 점이다. 사실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는 연금에 대한 규제보다 그 강도가 크다. 그리고 이들 차이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는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134].

라. 연금 세제와 연금기금의 자산운용규제 및 공시

세제상의 규제는 연금제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근로자들과 기업의 연금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나라들은 세제혜택을 통하여 퇴직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세제혜택은 공제대상인 갹출금에는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초과적립이 수혜자에게는 바람직하지만 세제당국에서는 초과적립분 중 일정 한도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제혜택은 크게 갹출금, 기금적립, 급부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갹출금과 급부에 대한 각 나라별 세제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세제적격연

134) 네델란드, 벨기에,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규정이 연금기금에 적용되는 규정과 일치하고 있는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유사한 원칙에 근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르게 규제되고 있다. OECD(1998), p.96.

금인 경우 기업이 연금기금에 내는 갹출금은 공제대상이며, 또한 그 세금부담이 근로자들에게 전가되지도 않는다. 즉, 그 갹출금을 근로자들에 대한 간접소득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135]. 한편 공동갹출형의 경우 근로자가 내는 갹출금도 공제대상이다. 물론 이러한 공제수준은 갹출금 자체나 간접적으로 갹출금에 의한 급부수준에 대하여 일정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자산운용수익과 자본이득은 연금기금이 세제당국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136]. 반면에 연금보험상품의 구입과 마찬가지로 연금급부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137].

한편 보험회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는 책임준비금과 자기자본을 명확히 구분하여 최저자본수준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의 투자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나, 자산 뿐만 아니라 자산의 평가방식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하고 있다. 자산에 대한 평가는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금기금의 투자활동에 대한 규제도 보험회사와 유사한 원칙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규제방식은 보험회사와 다르다. 먼저 연금제의 형태에

---

135) 독일의 경우가 예외에 속한다. 기업과 별개의 연금기금을 설립·운영하지 않는 기업내 준비금설정(book reserve)을 통한 연금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간접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다. [부록Ⅳ-4] '연금세제' 참조.

136) 조세, 특히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의 비효율은 사람들의 저축동기를 감소시키는데 있다. 1995년에 미 하원의 빌 아쳐(Bill Archer)의원은 소득세제를 소비세제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었다. 과세근거를 소득에서 소비로 바꾸어 소비세(consumption tax)를 부과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연금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소비세 형태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일정 한도내에서 연금기금에 저축을 하고 퇴직할 때에 연금으로 인출할 때까지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조세가 사람들의 저축동기를 왜곡시키지 않아 기업과 근로자들의 참여 유인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N. G. ManKiw(1998), p.246.

137) 또 한 가지 기금 자체와 관련하여 주목할 사항은 기금의 운영자가 비영리법인인 연금기금이냐, 아니면 영리법인인 보험회사냐에 따라 세제상에 혜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OECD(1998), p.110-111.

따라 규제가 다르다. 선량한 관리자원칙(prudent-man rules)이 충분히 적용되고 있는 확정급부형(DB)보다 그렇지 못한 확정갹출형(DC) 연금제에 대한 규제강도가 크다. 확정갹출형의 경우 연금기금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투자위험을 부담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투자에 대한 공시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연금기금에 대한 규제는 기업이 최종적인 채무(the "result" obligation)를 지는 경우와 기업이 그 위험을 단체보험을 통하여 보험회사에 전가(transfer)시키는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연금기금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해당 연금기금의 투자이다. 이런 유형의 자산운용에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그 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의 확정급부형(DB) 연금제의 경우 기금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영국은 5%, 벨기에는 15%, 스위스는 10%이다. 덴마크의 경우는 아예 이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모든 연금제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ERISA는 401(k) 연금제와 같은 이윤분배형의 경우 자사주 보유가 오히려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근거에서 10%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제Ⅰ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의 초점은 선관주의(prudent-man rules)방식이 수량규제보다 유용한가에 대한 논의이다. 어느 방식이 우월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다만, 효과적인 내부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선관주의 감독방식이 유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제Ⅰ장의 [표1] 참조).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아일랜드 등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과 유럽의 대륙계 국가들은 수량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체적인 추세는 연금기금 관리자들에게 보다 많은 책임과 함께 보다 큰 신축성을 허용하고 있다. [부록Ⅳ-4]에서 OECD 주

요국들의 연금관련 세제와 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요약해 놓았다.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유럽의 경우 공시와 관련하여 매우 느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들은 기업에게 연금기금이 사용하고 있는 평가방식이나 기금의 충분성 등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38]. 다만, 영국이나 아일랜드의 경우는 이를 기업의 재무제표에 공시하도록 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연금기금의 경우에도 일부 나라들만이 연차보고서를 가입자들에게 배부하도록 법에서 강제하고 있다. 사전적 또는 사후적, 수량주의적 또는 선관주의적 감독방식과 연금참여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간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138) OECD(1998), pp.108.

[부록Ⅳ-4] 연금관련 규제 및 통계

Ⅰ. OECD 주요국 연금기금의 자산운용규제와 연금세제[139]

1) OECD 주요국의 연금기금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구분	자산운용 규제(max: "-", min: "+")
프랑스	○ 국채: 34%+, 대출한도: 30%- , 자산: 40%- ○ 재무부 예치(treasury deposits): 15%- ○ EU 공공채권: ARCCO, AGIRC 자산의 50%+
독 일	○ 가이드라인 - EU의 주식: 30%-, 부동산: 25%-, 채권: 6%- - 해외자산: 20%-, 기업내·가입기업에 대한 투자: 10%-
일 본	○ 채권: 50%+ ○ 주식: 30%-, 부동산: 20%-, 해외자산: 30%- ○ 단일기업 투자한도: 10%-
영 국	○ 가입기업에 대한 투자: 5%- ○ 선관주의
미 국	○ 선관주의

139) OECD(1998), p.100, pp.113-114.

2) OECD 주요국의 연금세제

구 분	갹출금		투자소득(이자, 자본)	급 부
	기 업	근로자		
프랑스	세금공제	세금공제	-	소득세
독일	기업내 설정(book reserve)연금제의 기업 갹출금공제; 근로자에게 과세(간접소득)	한도 공제	비과세	기금적립방식에 따라 낮은세율로 부분과세
영국	세금공제	세금공제	비과세	급부과세, 비과세원본 제외
미국	세금공제	401(k), IRAs 등 갹출금 공제	-	소득세
일본	세금공제	세금공제	연금자산 과세	소득세, 비과세원본 제외

Ⅱ. 미국 연금기금의 각종 통계자료[140]

1) 미국의 사적 연금기금 현황(1975년 1990년)

(단위: 천개, 백만명)

구 분	1975	1980	1985	1990
○ 총 연금기금 수(A)	311	489	632	712
- 확정급부형(DB)	103	148	170	113
- 확정갹출형(DC)	208	341	462	599
- DC / A	67%	70%	73%	84%
○ 연금기금 참여근로자 수(B)	45	58	75	77
- 확정급부형(DB)	33	58	40	39
- 확정갹출형(DC)	12	20	35	38
- DC / B	27%	34%	47%	50%

2) 미국 노령인구의 소득원천별 구성

(단위: %)

연령	소득원천	1974	1984	1992
55+	사회보장연금	19.5	21.4	23.6
	기업연금	8.5	11.1	15.0
	기타소득(자산, 근로 소득 등)	72.0	67.5	61.4
	전 체	100.0	100.0	100.0
65+	사회보장연금	42.2	40.5	41.7
	기업연금	14.0	15.0	20.1
	기타소득(자산, 노동 등)	43.8	44.5	38.2
	전 체	100.0	100.0	100.0

* 1975, 1985, 1993 Current Population Surveys에 의거한 EBRI 계산치.

---

140) 여기에 제시된 통계자료는 김장호(1997)에서 재인용한 것이며, 원전은 EBRI, *RBRI Databook on Employee Benefits*, Washington D.C., 1995.

3) 미국 노령인구(65세 이상)의 소득계층별 소득원천 구성

(단위: %)

계층 / 원천	최저	중하	중	중상	최고	계
사회보장연금						
- 1974	88.6	77.7	74.6	55.4	19.9	42.0
- 1992	82.6	81.1	69.6	50.5	20.4	41.7
기업연금						
- 1974	1.5	2.3	4.6	14.4	18.8	14.0
- 1992	2.1	3.2	10.6	22.9	25.9	20.1
자산소득						
- 1974	3.8	4.4	7.4	14.1	25.7	18.2
- 1992	6.6	8.0	12.6	16.6	27.5	20.5
노동소득						
- 1974	-3.2	2.8	4.8	11.4	33.8	21.3
- 1992	-0.4	1.5	4.3	7.6	24.1	14.8

* Current Population Surveys에 의거한 EBRI의 계산치.

4) 미국의 퇴직연금 종류별 수혜금액의 구성비

(단위: %, 10억달러)

구 분	1970	1980	1990	1993
사기업연금	15.9 (7.4)	19.7 (36.4)	31.9 (148.8)	33.3 (192.6)
연방·주 정부 근로자 퇴직연금	22.0	23.4	20.3	20.5
소 계	37.9 (17.6)	43.1 (79.5)	52.2 (243.3)	53.8 (311.3)
사회보장연금(OASI)	62.1	56.9	47.8	46.2
총 계	100.0 (46.4)	100.0 (184.6)	100.0 (466.3)	100.0 (579.1)

* 괄호 안의 수치는 10억달러 단위의 수혜금액임.

Ⅴ. 향후 과제

민간부문에 의한 노후보장제도의 강화가 각 나라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41]. 독일의 수상 게하르트 슈뢰더도 사회보장의 향후 세 가지 발전방향 중 하나로 사적 노후보장제도의 강화를 언급하고 있다[142]. 이번 연구도 사적 노후보장제의 핵심인 퇴직연금제도를 폭 넓게 조망하기 위하여 미국의 퇴직연금회계, 특히 확정급부형(DB) 연금제의 회계제도를 중심으로 기본 가정에서부터 공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과 이와 관련된 법령 및 세제, 그리고 감독 추세를 하나의 줄기로 살펴 보려고 했다. 지금까지의 논의로 기업과 근로자, 연금기금으로 이루어진 퇴직연금이 어떠한 회계기준에서 어떤 회계정보를 생성·제공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번 연구로 퇴직연금이 연금회계기준 및 연금관련 법령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해 온 유기적 체제라는 것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드러내 보였다고 판단되지만, 오히려 연금제와 연금회계에 대한 보다 깊이 있

141)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국내에서도 국영과 민영연금간 공조 운영체제를 전제로 하여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의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민영금융시장의 활성화 수용, 고갹출·저급부의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의 민영화, 정부주도형 연기금 운용의 비효율성 최소화, 저소득층의 노후보장 등을 위한 국민연금의 민영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국들의 민영화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민영화 논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성주호·김진억(1999) 참조. 한편 국민연금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글로는 이용하(1998) 참조.

142) 슈뢰더는 기본금액이 보장되는 의무보험제(공적연금, 의료보험제 등)의 유지, 사적 연금제의 강화, 그리고 국민경제의 자본금인 산업자산에 근로자가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실업의 감소라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 셋을 각각 커피, 우유, 코코아에 비유하여 "카푸치노" 모델이라 명명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사적 영역의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조세가 면제되는 연금과 마찬가지로 보험에 대해서도 조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생명보험은 순수한 자본금이 아니라 진정한 노후대책임을 강조하면서 분할연금과 일시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여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게하르트 슈뢰더(1999).

는 이해를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야 할 것같다.

첫째, 기업의 연금제도 설립과 연금기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업 연금제에 대한 법률 및 세제지원 측면의 고려와 연금기금의 계리 및 재무 건전성을 축으로 하는 기초연구는 향후 다양한 연금제를 수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감독당국의 연금제의 감독방향 설정에도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기업의 연금제·연금기금과 보험회사 등 수탁기관의 관계, 특히 연금기금과 보험회사의 연결고리인 보험상품을 포함한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는 연금제 운영주체와 기금의 운용주체가 일치하는 기금수탁기관을 중심으로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수혜자인 근로자 중심의 보다 다양한 제도의 수용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취급기관과 그에 따른 다양한 상품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게 될 연금채무를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구입을 통해서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퇴직급부보장에 대한 문제도 보험산업내 지급보장으로 옮겨 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PBGC와 같은 연금급부보장기능의 논의와 더불어 보험회사의 지급보장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기업(연금기금)이 책임지고 있는 일부 또는 모든 채무를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상품 등을 구입함으로써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경우와 기금을 위탁을 받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리계정(separate account)운영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는 효과적인 상품운영 및 효율경영을 위해 퇴직보험 상품 및 이와 유사하게 분리계정 또는

구분계리가 필요한 보험산업에 보다 유용한 연구가 될 것이다.

넷째, 퇴직연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보험계리인, 공인회계사 등의 역할 설정과 요율산출기관의 요율정보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퇴직연금에 대한 적시적절한 정보공시가 이루어지게 하는 효율적 감독운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물론 회계제도 및 연금관련 법령의 정비, 다양한 연금제 출현에 대비한 연금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가 종합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의 회계기준을 축으로 한 세계공통의 회계기준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도 회계기준의 전면적 개편과 함께 연금회계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물론 그 준거 틀은 미국의 연금회계기준이다. 더욱이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아 기존 퇴직급여충당금회계와 새로운 연금회계기준과의 조정, 신기준 도입에 따른 제반 고려사항 등은 새로이 기준을 잡아야 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세밀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거나 논의전개 과정에서 부딪혔던 문제점들을 나열한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연금회계를 조사·연구하여 큰 줄기를 찾는 것이 보고서의 목적이었으므로 여러 선진국가들의 연금제와 연금회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비교자료를 검토하는데 그쳤고,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연금제에 대해서도 보고서의 주제와도 맞지 않아 가급적 언급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다만, 이 보고서 말미의 [별첨]에 지난 3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제도”)의 개요를 담은 보도자료 내용을 실어 점차 모습을 갖추어 나갈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부록 Ⅴ] 연금회계의 용어[143]

감액(Curtailment)
'연금제의 감액' 참조.

개별관리 복수기업 연금제(Multiple-employer plan)
하나 이상의 기업들이 연금제를 유지하지만, 이를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로 보지는 않음. 개별관리 복수기업 연금제는 단일기업 연금제나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 만큼 보편적인 것은 아니나, 현존하는 이들 연금들 중 일부는 대규모로서 많은 기업들이 가입하고 있음. 개별관리 복수기업 연금제는 단체교섭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상적으로 동일 산업내에 있는 연금가입 기업들이 투자목적으로 자산을 통합하고, 연금관리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를 가진 것임. 개별관리 복수기업 연금제는 각 기업에 대하여 분리계정(separate accounts)을 유지하여 갹출금이 갹출금을 내는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의 급부에만 쓰도록 하고 있음. 일부 개별관리 복수기업 연금제는 가입 기업들이 각각 다른 급부산출공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업의 갹출금은 기업이 선택한 급부산출공식에 근거하고 있음.

개별할당계약(Allocated contract)
보험회사와 맺는 계약상에 보험사는 납입된 금액(갹출금; 보험료)을 개별 연금참여자들을 위한 (즉시 지급식 또는 일정기간 거치후 지급식) 연금상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한 계약. '연금보험상품' 참조.

계리적 기금적립방식(Actuarial funding method)
연금급부의 지급을 위하여 연금제에 가입한 기업들이 납입하여야 할 갹출액을 결정하는 연금계리인들의 여러 할당기법들.

---

143) FASB(1995)의 Appendix D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계리적 손익(Actuarial gain or loss)
"손익" 참조.

계리적 현재가치(Actuarial present value)
특정일을 기준으로 향후 지급하거나 받아야 할 금액 또는 금액들의 가치로서 각각의 금액은 (1) (이자율 할인을 통한) 화폐의 시간가치와 (2) 사망, 장애, 탈퇴, 퇴직과 같은 사건들에 대한 감소를 통하여) 특정일과 예상지급일간의 지급확률을 반영하여 조정된 것임.

계산기초(Assumptions)
연금원가에 영향을 주는 사망, 탈퇴, 장애와 퇴직, 급여 및 국민연금 급부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는 이자율의 변동과 같은 미래의 사건발생에 대한 추정치들.

계산기초에 대한 명시적 접근방식
(Explicit approach to assumptions)
사용된 가정들은 각각의 가정에만 고유한 최선의 미래추정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임.

계산기초에 대한 묵시적 접근방식
(Implicit approach to assumption)
사용된 가정들이 각각의 가정에 대한 최상의 미래추정치를 나타내지 않는 대신 이들 가정들을 결합한 총효과가 명시적 접근방식과 유사할 것으로 가정되는 방식.

고정급부방식(Flat-benefit formula: Flat-benefit plan)
1년 근무당 고정액, 즉 연간 인정 근무에 대하여 월간퇴직소득의 $20과 같은 일정액에 근거하여 급부를 산출하는 방식. 이러한 산출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고정급부 연금제임.

공정가액(Fair value)
자발적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당기 거래에 대한 투자에서 받으리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금액. 강제 또는 청산 거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

과거근무원가(Prior service cost: PSC): 소급급부원가
연금제의 수정시 인정되는 소급급부원가.
"미인식 과거근무원가," "소급급부" 참조.

근무(Service)
연금제에서 고려되는 고용기간. 연금제 시행전의 수 년간의 고용기간은 근로자의 과거근무(past service)가 됨. 그 이후의 기간은 특정 계리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구분. 특정평가일 이전의 근무기간은 이전근무(prior service)가 되고, 그 평가일 이후의 근무기간은 미래근무(future service)가 됨. 평가일에 근접한, 즉 평가일이 속하는 1년간은 현재근무(current service)가 됨.

근무원가(Service cost component of net periodic pension cost)
급부산출공식에 의하여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귀속되는 급부의 계리적 현재가치. 근무원가항목은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의 일부분으로서 연금의 기금적립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음.

급부(Benefits)
연금제에서 수급권을 가진 연금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급부로서 연금급부, 사망급부, 고용계약중단에 따른 급부가 포함됨.

급부 / 근무년수 비율획득방식(Benefit/years-of-service approach)
세 가지 급부방식 중의 하나. 이 방식하에서는 총 추정급부의 균등분할분을 매년의 근무에 귀속시키는 방식임. 따라서 급부의 계리적 현재가치는 각 급부가 해당 기간에 귀속된 이후에 도출.

급부산출공식(Benefit formula)
"연금급부산출공식" 참조.

급부원가방식(Cost approach)
연금급부 또는 연금원가를 근무기간에 귀속시키는 두 가지 기본적인 방식 중의 하나. 이 방식에서는 연금의 순기간원가를 급여의 일정 평준액 또는 고정비율로 할당한다. "급부획득방식" 참조.

급부지급을 위한 연금자산(Plan assets available for benefits)
"연금자산" 참조.

급부획득방식(Benefit approach)
연금급부 또는 연금원가를 근로자의 근무기간들에 귀속시키는 두 가지 기본적인 접근방식 중의 하나. 이 방식은 일정한 급부단위를 매년의 인정근무에 할당한다. 이 급부단위의 계리적 현재가치는 따로 계산되고, 그 단위(원가)를 그 해에 할당한다. 급부방식에는 누적급부방식, 급부-급여비율 방식, 급부-근무년수비율 방식이 있다.

기간귀속(Attribution)
연금급부 또는 연금원가를 근로자의 근무에 할당하는 과정

기금적립(Funding method)
"계리적 기금적립방식" 참조.

기금적립정책(Funding policy)
연금제에서 명시한 급부를 지급할 목적으로 기업, 연금참여자, 기타 재원(예를 들어, 정부보조금 등)으로부터의 갹출금 규모, 납입시기를 정해 놓은 프로그램.

기업-근로자 공동갹출형 방식(Contributory approach)
근로자들도 연금원가의 일부를 갹출하는 연금제. 일부 갹출형 연금제에서는 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은 갹출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반면, 또 다른 갹출형 연금제에서는 근로자들이 갹출하게 되면 급부가 증액됨.

누적급부채무(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ABO)
연금수급권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정일 이전의 근로자의 근무와 급여에 근거, 연금급부산출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급부의 계리적 현재가치. 누적급부채무(ABO)는 미래급여수준에 대한 가정이 없다는 점에서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와 다름. 정액급부 또는 급여와 관련없는 연금급부채무를 지는 연금제에서는 누적급부채무와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간에는 차이가 없음.

단일기업 연금제(Single-employer plan)
하나의 기업에 의하여 유지되는 연금제도. 이 용어는 모회사 및 그 자회사와 같은 관계기업들에 의하여 유지되는 연금제에도 사용되기도 함.

무배당부 연금보험상품(Nonparticipating annuity contract)
이 상품은 연금보험상품 구입자에게 보험사의 투자성과나 기타 실적에 대한 배당을 않음. "연금보험상품" 참조.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rojected benefit obligation: PBO)
특정일 현재 연금급부산출공식에 의하여 특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제공한 근무에 귀속되는 모든 급부의 계리적 현재가치. 연금급부산출공식이 미래급여수준(급여연동, 최종평균급여, 또는 전근무기간 평균급여)에 근거하고 있다면 미래급여수준에 관한 가정을 이용하여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를 측정함.

미인식 과거근무원가(Unrecognized prior service cost)
과거근무원가 중 연금의 순기간원가의 일부로서 인식되지 않은 부분.

미인식 순손익(Unrecognized net gain or loss)
연금의 순기간원가의 일부로서 인식되지 않은 순손익의 누적액. "손익" 참조.

미적립 누적급부채무(Unfunded 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누적급부채무가 연금자산을 초과하는 금액

미적립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
(Unfunded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연금자산을 초과하는 미래급여반영 연금채무액.

미적립 연금비용(Unfunded accrued pension cost)
기업의 갹출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순연금원가의 누적액

미할당계약(Unallocated contract)
이 계약은 보험사에게 납입되는 갹출금이 근로자들의 퇴직급부 제공에 있어서 특정 근로자에게 할당되지 않은 형태의 기금으로 적립되어 연금보험을 구입하거나 직접 지급에 사용되도록 하는 계약. 이 계약에서는 보험사가 보유하는 기금은 환수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투자될 수도 있음.

배당부 연금보험상품(Participating annuity contract)
연금상품 구입자에게 보험사의 투자성과나 가능하다면 기타 실적에 대하여 배당을 하는 상품.

배당수급권(Participation right)
보험사로부터 배당을 향후 받기로하거나 소급하여 받을 배당부 상품의 구입자의 권리.

비상장기업(Nonpublic enterprise)
(1) 기업의 투자증권 또는 지분증권이 (일정지역(주내)에 국한하여 거래되는 것을 포함하여) 주식시장 또는 장외시장과 같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거나, (2) 기업이 증권을 판매함에 있어서 감독당국에게 기업의 재무제표를 신고하여야 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사망율(Mortality rate)
특정 그룹내의 기초의 생존자 수에 대한 기중의 사망자 수의 비율. 계리인은 지급하여야 할 연금급부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경험생명표를 사용하는데, 경험생명표에는 연령별 사망률이 나타나 있음.

상각(Amortization)
통상적으로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채무를 줄여나가거나, 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자산을 줄여나가는 과정을 일컬음. 연금회계에서는 미인식된 과거근무원가와 순손익을 포함한 과거에 미인식된 금액을 여러 기간에 걸쳐서 순연금원가에서 인식하는 것을 일컬음.

선급연금원가(Prepaid pension cost)
발생 순연금원가를 초과하는 기업의 누적 갹출액.

소급급부(Retroactive benefits)
연금제의 수정시 연금급부산출공식에 의하여 연금제의 수정 이전의 기간동안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된 급부. 소급급부원가는 과거근무원가라고도 함. 연금채무의 평가시 측정일 이전에 발생한 근무에 귀속되는 모든 급부를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과거급부(benefits for prior service)와 구별.

손실(Loss)
"손익" 참조

손익(Gain or loss)
계리기초의 변동, 즉 예정율과 실제경험치와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 또는 연금자산(PA)의 가치변동. "미인식 순손익" 참조.

손익 항목
(Gain or loss component of net periodic pension cost)
손익은 다음의 (1)과 (2)의 합. (1) 연금자산의 실제수익과 예상수익간의 차이, (2) 과거에 미인식된 순손익의 상각. 순기간원가의 구성요소인 손익은 손익의 인식지연에 따르는 순효과(미인식 순손익의 순변동)로서 여기에는 해당 기간동안의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의 변동을 포함하지 않음.

ERISA(The Employment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근로자퇴직급부소득보장법.

연금급부(Pension benefit)
연금제가 정한 조건에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나 그 수익자에게 정기적으로(통상 매달) 지급되는 급부.

연금급부산출공식
(Pension benefit formula: plan's benefit formula or benefit formula)
연금제에서 수급권을 가진 연금참여자에 대한 지급액을 결정하는 근거. 연금급부산출공식은 근로자의 근무기간 또는 급여, 아니면 이 둘 모두를 감안하는 것이 일반적임.

연금기금 또는 기금적립(Fund)
연금기금(a funding agency)에게 갹출액을 납입하는 행위를 기금적립이라 하고, 이렇게 납입되어 연금기금내에 만기가 되었을 때 연금급부를 지급할 목적으로 축적된 자산을 기금이라 함.

연금보험상품(Annuity contract)
보험사는 일정한 대가 즉, 보험료를 받고서 개개인별 연금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연금급부를 보험사가 무조건적으로 책임지기로 한 계약. 이 계약은 취소가 불가능하며 기업이 상당부분의 위험을 보험사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계약을 개별할당계약이라고도 부름.

연금의 순기간원가(Net periodic pension cost): 연금비용
기업의 재무제표에 한 회계기간의 연금원가로 인식되는 금액. 연금의 순기간원가의 구성요소에는 근무원가, 이자원가(비용), 연금자산의 실제수익, 손익, 그리고 미인식 과거근무원가의 상각 및 SFAS 87이 시행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미인식된 순자산 또는 순채무의 상각이 있음. SFAS 87에서는 "순연금비용(*net pension expense*)"이라는 용어 대신에 연금의 "순기간원가(*net periodic pension cos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는 한 회계기간동안 인식되는 원가 중 일부분이 자산화될 수 있기 때문임.

연금자산(Plan assets: PA)
일반적으로 주식, 채권, 기타 투자자산 등의 자산은 급부제공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신탁의 형태로) 분리하여 관리되고, 그 사용이 제한되어 왔음. 연금자산에는 기업이(갹출형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함께) 갹출한 금액과 그 갹출금의 투자에서 얻은 소득이 포함되고, 지급된 급부는 제외. 연금기금의 자산이 채무를 초과하고 기업이 기존 채무를 충족시킬 조치를 취해 놓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연금자산을 가져갈 수 없음. SFAS 87의 목적상 기금내에서 자산

이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경우 이들 자산이 연금급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연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연금의 순기간원가로 기업에게 발생되었지만 아직 연금기금에 납입되지 않은 금액은 SFAS 87의 목적상 연금자산이 아님. 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증권은 거래가능한(transferable) 것이라 할지라도 연금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기금이 급부 이외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이들 비급부채무는 SFAS 87의 목적상 연금자산의 차감항목으로 봄.

연금자산의 수익(Return on plan assets)
"연금자산의 실제수익," "연금자산의 예상수익" 참조.

연금자산의 시장연동가치(Market-related value of plan assets)
연금자산의 예상수익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잔고. 시장연동가치는 공정가액이 될 수도 있고, 5년미만의 기간동안의 공정가액의 변동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계산하여 인식한 가치일 수도 있음. 시장연동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여러 방식이 있지만, 일단 선택된 가치결정방식은 매기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연금자산의 실제수익
(Actual return on plan assets: componenet of net periodic pension cost)
연금자산의 기초 공정가액과 기말 공정가액간의 차이에서 기중에 이루어진 갹출액의 납입액을 차감하고, 지급된 급부액을 더한 금액.

연금자산의 예상수익(Expected return on plan assets)
연금자산의 공정가액 변동을 지연 인식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근거로서 계산된 모든 금액. 연금자산의 예상수익률은 연금자산의 장기예상수익률과 시장연동가치에 근거하여 결정됨.

연금자산의 장기 예상수익률
(Expected long-term rate of return on plan assets)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PBO)에 포함되는 급부를 지급하기 위한 연금기금의 기투자 또는 향후 투자시 예상되는 평균수익률을 반영하는 연금자산의 수익률에 대한 가정.

연금제의 감액(Plan curtailment)
현 근로자의 예상근무년수를 크게 줄이거나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일부 또는 전체 미래근무에 대한 확정급부의 발생을 제거하는 사건.

연금제의 급부산출공식(Plan's benefit formula)
"연금급부산출공식" 참조.

연금제의 수정(Plan amendment)
기존 연금제의 조건의 변화, 또는 새로운 연금제의 시행. 연금제의 수정은 급부를 증대시키고, 여기에는 과거 근무에 귀속되는 급부가 포함됨. "소급 급부" 참조.

연금제의 신규가입중단(Plan suspension)
연금제가 동결되어 더 이상의 급부발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 연금제의 신규가입중단일 현재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은 급부에 대한 미래근무는 지속될 수 있음. 연금제는 계속해서 자산을 보유하고, 이미 발생한 급부는 지급하며, 아직 미적립된 급부에 대하여는 기업에게서 추가적인 갹출금을 납입받음. 근로자들은 기업을 위하여 계속 근무하지 않을 수도 있음.

연금제의 중단(Plan termination)
연금기금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아 모든 급부가 연금보험상품이나 기타의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청산되는 사건. 연금기금은 다른 연금

기금에 의하여 대체될 수도 있음. 다른 연금기금으로 대체되는 연금제의 중단은 회계목적상으로는 연금제의 중단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음. "청산" 참조.

연금수혜자(Participant): 연금참여자, 근로자
근로자 또는 전직 근로자, 아니면 많은 근로자군, 또는 그들의 수익자로서 연금급부가 있는 사람.

원가/급여 방식(Cost/compensation approach)
두 가지 급부원가방식의 하나. 이 방식은 매 기간 급여의 고정비율이 연금의 순기간원가가 됨.

이자원가: 이자비용
(Interest cost component of net periodic pension cost)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래급여반영 급부채무의 증가.

이자율(Interest rate)
"할인율" 참조

이직(Turnover)
사망, 퇴직 이외의 이유로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

전근무기간 평균급여기준 급부산출공식(연금제)
(Career-average-pay formula; career-average-pay plan)
근로자의 전근무기간에 걸친 급여에 근거하여 급부를 산출하는 공식. 이러한 급부산출공식을 사용하는 연금제가 전근무기간 평균급여기준 급부연금제.

청산(Settlement)
기업(또는 연금기금)이 연금급부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 청산을 위하여 사용될 채무와 자산에 관련된 상당한 위험을 제거하게

되는 행위. 청산이 이루어지는 거래의 예로서는 (1) 특정 연금급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연금참여자들에게 현금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무배당부 연금보험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있음.

최종급여기준 급부산출공식(Final-pay formula: Final-pay plan)
근로자가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기간 말에 가까운 몇 개년의 급여에 근거하여 급부를 산출하는 공식. 예를 들어, 매년 근무에 대하여 근로자의 최종 5개년간의 평균급여(또는 급여가 가장 높은 연속 5개년)의 1%를 연간 연금급부로 하는 연금제가 있을 수 있음. 최종급여기준 연금제는 이 산출공식을 사용하는 연금제임.

측정일(Measurement date)
연금의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는 날.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Multi-employer plan)
둘 이상의 관계없는 기업들이 갹출금을 내는 연금제로서 통상적으로 하나 이상의 단체협상에 따라 이루어짐.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의 특징은 한 연금가입 기업이 갹출한 자산이 다른 연금가입 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급부를 제공하는데 쓰여질 수도 있다는 것임. 이는 갹출된 자산들이 별개의 계정으로 분리되지 않거나 기업의 갹출금이 그 기업 근로자들의 급부제공만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제한되지 않기 때문임.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는 경영진들과 근로자 대표들로 구성된 신탁위원회가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동신탁(joint trust) 연금제 또는 조합(union) 연금제로 불리기도 함.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 연금제에 참여하며, 한 기업이 하나 이상의 연금제에 참여할 수도 있음. 통합관리 복수기업 연금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공통 산업군의 특색을 지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연금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노조가 유일한 유대를 형성하기도 함.

PBGC(The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연금급부보장공사. 유사한 기관으로 영국의 PCB, 독일의 PSVaG가 있음.

할인율(Discount rate)
화폐의 시간가치를 계산하는데 쓰이는 이자율
"계리적 현재가치" 참조.

확정갹출형 연금제(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금급부를 제공하는데, 개별 연금참여자에 대하여 개별계정을 제공하고, 개개인이 받을 급부액을 정하지 않고 개별계정에서 납입할 갹출액이 얼마인가를 확정한다. 확정갹출형 연금제에서 연금참여자가 받게 될 급부는 각 참여자의 계정에 할당된 갹출액, 갹출액을 운용한 투자수익과 다른 참여자의 급부로서 몰수된 급부의 할당액에 따라 달라짐.

확정(기발생; 수급권획득) 급부(Vested benefits)
미래연금급부의 현재가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가 더 이상 근로자의 잔여 근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의 급부(물론 연금기금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확정 급부, 즉 이미 수급권을 획득한 급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음). 수급권을 얻는데 등급이 적용되는 경우 최초의 수급권은 향후 인정근무기간의 누적년수에 근거하여 정해진 일정 율(%)의 연금을 받게 되는데, 그 율은 전체 급부에 대한 수급권이 생기기 전까지는 근무년수 또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게 됨.

확정급부형 연금제(Defined benefit pension plan)
제공할 연금급부액을 확정한 연금제. 통상적으로 연금급부는 연령, 근무년수 또는 급여와 같은 하나 이상의 변수들의 함수임. *SFAS 87에서는 확정갹출형이 아닌 모든 연금제는 확정급부형을 지칭

확정(기발생, 수급권획득) 연금채무
(Vested benefit obligation: VBO)
연금수급권을 획득한 급부의 계리적 현재가치. 일본문헌들에서는 확정급부채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도 함.

후원자(Sponsor): 기금갹출자
단일기업에 의하여 수립, 운영되는 연금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수립, 운영하는 연금제에 가입한 기업, 또는 하나 이상의 근로자기구·협회, 위원회, 공동신탁위원회 및 기타 연금제를 운영하거나 수립한 당사자들의 대표자그룹이 운영, 유지하는 연금제의 기구, 협회, 위원회, 그룹 등. 본문에서는 기업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별첨] 보도자료: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도입방안[144)]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에서 신고한 퇴직보험의 기초서류를 수리하여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99년 4월부터 퇴직보험의 판매가 예상됨

□ 퇴직보험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한 법정퇴직금을 안전하게 사외에 위탁하는 형태로서, 동제도가 도입됨으로서 社會保障(국민연금), 自己保障(개인연금)제도와 더불어 3층 老後保障論에 입각한 선진국형 綜合老後保障制度의 기초가 마련되었음

□ 퇴직보험이 도입되게 된 배경은 최근 들어 기업이 도산할 경우 법정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의 실직기간의 생활안정이 필요하고, 급속한 노령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른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생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누적되는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자금압박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서,

□ 퇴직보험이 도입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획적으로 적립함으로 인해 기업경영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절세효과로 기업의 실질부담이 경감되며, 고용의 안정화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근로자 측면에서는 퇴직금의 수급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기업이 도산될 경우에도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어 실직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장기근속을 하고 퇴직

144) 금융감독원(http://www.fss.co.kr), 1999년 3월 3일자 보도자료.

할 경우에는 기업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함으로서 노후생활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임

□ 한편, 동 제도가 정착될 경우에는 개인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와 상호보완하여 노후보장기능을 충실화할 수 있으며, 연금자산의 장기적 운영으로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퇴직보험의 주요 특징으로는 사외에 적립된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이 근로자에게 있고, 적립금을 양도하거나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매년 금융기관은 각 근로자에게 보험료 납부상황과 퇴직금 예상액을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법정퇴직금의 성격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에 실패한 경우라도 원본은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당초 취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던 은행 및 투자신탁회사는 채권 및 주식의 시가평가제도 등으로 인하여 원본보전이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아직까지 상품개발안을 확정짓지 못하였으며, 관련제도 등을 보완하여 개발을 추진할 예정임.

※ '98. 10월 금융감독원에서 한국노총, 한국사회보장학회, 전경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전기관 공히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은 원본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음

□ 아울러 현재 도입되는 퇴직보험제도는 근로자가 동일 직장에서 장기근속할 경우에만 기업연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형태이므로, 기업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우리나라 근로자의 동일회사 평균재직년수: 5.3년)

□ 금융감독원에서는 관련 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99년 상반기 중 "사적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노총, 경총, 재경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기업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

1. 퇴직보험(퇴직신탁)에 대해서 원본보전을 하는 이유는?

□ 퇴직보험(퇴직신탁)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기업이 도산하게 되어 법정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법정퇴직금 재원을 사내에 유보하는 대신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취지이며,

○ 기업이 퇴직보험(퇴직신탁)에 가입한 경우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동 퇴직보험 등에 의해 지급되는 일시금의 액은 법정퇴직금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근로기준법 제34조 4항)하고 있음

□ 따라서 퇴직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기업으로부터 수납받은 퇴직자산의 안정적인 자산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물론, 최소한 납입원금 이상 항상 지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 또한 퇴직보험(퇴직신탁)은 기업의 여유자금 운용수단으로서의 금융상품이 아니며, 퇴직금의 사회적 역할과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납입원금 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법 취지이며,

※ '98. 10월 금융감독원에서 한국노총, 전경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에서도 전기관 공히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은 원본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요

구하였음

2. 외국의 퇴직보험(퇴직신탁)도 원본보전을 요구하는가?

□ 우리나라의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은 법정퇴직금을 사외에 위탁시키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에 따라서 원본보전을 하는 것이 필요한 매우 제한적인 형태의 기업연금제도이나,

□ 외국의 기업연금제도는 모두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임의제도이므로 원본보전을 요구하지 않음. 따라서 은행, 투신, 보험회사에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으며, 일부 대형기업의 경우에는 회사내에 기업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금제도에 대한 보험수리적 설계 및 관리는 그 위원회에서 하고 자산운용만을 투자신탁회사 등에 위탁시키는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할 수 있음

[별첨 표1] 기업연금제도의 종류

보험료 산정방식	연금지급형태	보험료 부담주체
확정급부형(DB)* 1. 가입비율방식 2. 자기지분방식 (적립비율방식)	일시금형 (은행,투신,보험)	기업주전액부담 (비갹출형)
확정갹출형(DC)** 1. 급여비례방식 2. 일정금액방식 3. 종업원지주제 4.잉여금배분방식 등	연금지급형(보험) 1. 확정연금형 2. 종신연금형	종업원 일부부담형 (갹출형)

* 확정급부형은 퇴직시 지급할 금액(예: 법정퇴직금)을 먼저 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

** 확정갹출형은 정기적으로 부담할 보험료만을 결정하고 퇴직시 지급하는 금액은 투자실적에 따라 다른 제도임.

3. 종퇴보험과 퇴직보험의 비교

[별첨 표2] 퇴직보험(신탁)과 종업원퇴직보험(신탁)의 비교

구 분	종 퇴 보 험	퇴 직 보 험
제도의 의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외적립제도 ○기업주별 관리가 관행	○법정퇴직금으로 인정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보장 ○근로자별 관리가 기본
수급권	○근로자 동의시 기업주	○근로자
대출여부	○많은 기업이 대출 연계	○퇴직보험을 담보로한 대출 또는 양도금지
취급기관	○생명보험회사, 은행	○생명·손해보험회사, 신탁겸영은행, 투자신탁회사
근거법	○법인세법	○근로기준법
가입기업	○16인이상 단체	○5인이상 단체
종 목	○확정금리형(7.5%)	○확정금리형(6.0%), 금리연동형
지급형식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보험)
회계처리	○일반계정	○특별계정(일반계정과 분리)
보험료의 회계처리	○기업의 자산으로 계상	○기업의 비용으로 계상 - 퇴직급여충당금 감소

4.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의 시장규모는?

□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의 도입초기 시장규모는 사내적립금액 및 종퇴보험 가입현황을 감안할 때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최근 기업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수 증가와 중간정산 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퇴직금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98년도 중의 근로자 5인이상 기업의 총 퇴직금 추계액은 '97년도의 43조원에 비하여 10%가 감소한 39조원 규모로 추정됨.

○ 이중 사내적립으로 손비인정이 가능한 20조원(퇴직금 추계액의 50%)과 생보사의 종퇴보험 및 은행의 종퇴신탁에 가입한 17조 5천억원('98.12월 기준)을 제외할 경우, 퇴직보험의 추가 가입시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초기에는 노사관계 등에 의해 종퇴보험이 일부 퇴직보험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1년부터는 종퇴보험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퇴직보험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됨.

[별첨 표3] 우리나라 퇴직보험 시장규모 예측

구 분	1998년
①대상근로자수	4,918천명
②월평균임금	1,430천원
③근속년수	5.6 년
④퇴직급여추계액규모(①*②*③)	394,109억원
⑤사내적립가능금액(④의 50%)	197,055억원
⑥종퇴보험(종퇴신탁) 사외적립분	175,136억원
⑦신규시장규모(④ - ⑤ -⑥)	21,918억원

주) 노동부, 『1997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재정경제부, 『월간경제동향』 1999년 1월 자료를 인용하여 추정

5.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 의한 수탁고 현황은?

[별첨 표4] 공적연금제도별 가입자수 및 기금액 현황

('98.12월말 기준, 단위: 천명, 억원)

구 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합 계
가입자수	7,121	952	206	8,279
기 금 액	374,467	48,000	34,428	457,075

[별첨 표5] 개인연금의 기관별 가입자 수 및 수탁고 현황

('98.12월말기준, 단위: 천명, 억원)

구 분	은 행	투 신	생 보	손 보	총 계
보유건수	1,545	303	1,878	608	4,333
예 탁 액	63,329	24,078	60,548	18,684	166,639

[별첨 표6] 기업연금: 생보사의 종퇴보험 및 은행의 종퇴신탁

(단위: 천건, 억원)

구 분	종퇴보험	종퇴신탁	계
보유건수	1,561	32	1,593
예 탁 액	170,451	4,685	175,136

* '98. 12월말 금액

< 參考文獻 >

게하르트 슈뢰더, 『아직도 시간은 있다』, 생각의 나무, 1999, pp.255-265.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예산정책 이슈브리프」제98-03호 통권제45호, 1998.6.1, p.7.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정보』제99-4호, 1999, pp.35-39.

김장호, 『미국의 근로자 복지제도』, KLI 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7. 2.

김학은,「폰지게임과 베짓처방」, 이론과 실천, 1998, pp.246-249.

류건식 · 손성동, 「기업연금도입에 따른 수급권보호제도 정립방안」, 『사회보장연구』, 제14권 제2호(제17집), 사회보장학회, 1998.12.

보험개발원, 『기업연금보험의 운용방안』, 1997.9.

이용하, 「국민연금 민영화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보장연구』, 제14권 제2호(제17집), 한국사회보장학회, 1998.12.

성주호, 「퇴직보험의 운영방안과 과제」, 『퇴직보험 운영전략세미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8.8.

성주호 · 김진억, 『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9-3,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9.3.

성주호 · 김진억,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연구보고서 98-7,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8.6.

전성빈, 「부외부채와 결합재무제표」, 『서강 하버드비즈니스』,제83호, 1998.11-12.

Josei Ito, "21세기 생명보험사업의 미래 비전: 새시대의 판매채널," 「태평양보험회의(PIC, 제18차)발표논문집」,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7, pp.298-302.

多賀谷　充, 「退職給付に係る會計基準の設定に關する意見書について」, COFRI Journal, 1998.9, pp.19-21.

Carrie Bloomer edited, *The IASC-U.S. Comparison Project: A Report 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IASC Standards and U.S. GAAP*, Financial Accounting Stanadards Board of the Financial Accounting Federation, 1996.

Charles T. Hongren, *Cost Accounting*, 8th ed., 1994, p.26.

Don McGill, et al., *Fundamental of Private Pensions*, 7th ed., Pension Research Council of the 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6.

E. A. Mulligan & G. Stone,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in Life and Health Insurance Companies*, LOMA, 1997, pp.19-24.

F. J. Fabozi et al. edited, *The Handbook of Fixed Income Securities*, 5th ed., McGrawhill, 1997, pp.8-17.

FASB, *Original Pronouncements, Accounting Standards as of June 1, 1995 Vol. 1*, John Wiley & Sons, Inc., 1995.

Harvey W. Rubin, *Dictionary of Insurance Terms*, Barron, 1995.22.

M. E. Haskins et al.,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and Analysis: A Contextual Emphasis*, Irwin, 1996, pp.70-83.

Joo-Ho Sung, *Dynamic Progamming Approach to Pension Funding*, Ph.D. Thesis, City University of London, 1997, pp.35-36.

IASC(http://www.iasc.org.uk), *IAS 19, "Employee Benefits,"* 1998.

J. G. Siegel & J. K. Shim, *Dictionary of Accounting Terms*, Barron, 1995.

J. P. Friedman, *Dictionary of Business Terms*, Barron, 1994.

Kieso & Weygandt, *Intermediate Accounting*, 9th ed., 1998.

N. G. ManKiw, *Principles of Economics*, Dryden, 1998, pp.237-257.

OECD, *Financial Market Trend 71*, 1998.11.

Patrick. R. Delany, *Accounting and Reporting*, John Wiley & Sons, Inc., 1998, p.511.

_____, *Businessc Law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John Wiley & Sons, Inc., 1998, p.436-437.

Steven H. Gills, *Barron's Dictionary of Legal Terms*, Barron, 1998.

William. M. Mercer Inc., *FASB Statement 87 and 88: A New Approach to Pension Accounting*, 1988.

http://uscode.house.gov (**미하원 법령검색**)

http://www.aspa.org (**미국 연금계리인회**)

http://www.ebri.org (EBRI)

http://www.fsc.go.kr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http://www.iasc.org (**국제회계기준위원회**)

http://www.hitel.net/~wien524 (**제일화재 연금사이트**)

http://www.joongang.co.kr (**중앙일보**)

http://www.naic.org (NAIC)

http://www.prudential.com (**미국 프루덴셜생명**)

http://www.rutgers.edu (FASB)

http://www.wiley.com/college/kieso (Kieso)

< 著 者 略 歷 >

김 해 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책임연구원

(e-mail: haeskim@kidmail.kidi.co.kr)

연구조사자료 99-4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발 행 일	1999년 6월 일
발 행 인	박 성 욱
편 집 인	이 원 돈
발 행 처	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368-4000
인 쇄 소	(주)신정인쇄
	대표전화 701-7181

ISBN 89-88001-34-6 93320 **定價** 10,000**원**